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793-01

연구보고 : 2016-48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신 선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오 은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는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이 여성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여성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여성기업의 벤처진입과 벤처기업 지원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창업과 창직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도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에 처음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부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다 해도 크게 혜택을 받을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우대정책이 안정적인 창업과 기업활동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여성기업들이 많다.

○ 세계기업가정신 및 개발원[1](2015)이 발표한 여성기업가정신 지수(Female Entrepreneurship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77개국 중에서 43위이며, 여성기업가정신 지수(43위)가 세계기업가정신 지수(27위)보다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여성 벤처기업 지원제도(제2장)

1)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GEDI(https://thegedi.org/).

-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제3장)
- 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와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제4장)
- 여성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활용실태(제5장)
-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제6장)

○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분석
- 통계자료 분석 : 1)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01-2014) 원자료, 2)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공시시스템(벤처인)의 벤처기업공시 DB 통계자료, 3)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의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4)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15년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5)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통계 DB
- 면접조사 : 여성기업 대표 총 17명(벤처기업확인 완료 9명, 신청했으나 실패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 대표 3명, 신청준비 중(3명)이거나 희망하는 여성기업 대표(2명))
- 자문회의 운영 :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여성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투자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활동 전문가 혹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임원사 대표 등

Ⅲ. 주요 연구결과

1.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

○ 벤처기업 수는 2015년 말 현재 31,260개이며 여성 벤처기업은 2,566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에 4.1%에서 2015년에 8.2%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 여성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1,788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71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49개) 등이다. 전체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24.1%), 여가, 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4.5%), 도소매업(1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2%) 순이다.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도 소수의 벤처기업이 있으나 여성기업은 전혀 없다.

○ 벤처기업확인유형은 기술평가보증유형이 81.8%로 가장 많은데(2016. 8. 24. 기준), 이는 남녀 벤처기업에 공통된 현상이다.

○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2010년 52.7%, 2015년 53.8%)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여성 벤처기업도 경기도에 26.1%, 서울에 21.6%가 위치해 있다(2015년 기준).

○ 여성 벤처기업 대표자는 남성 벤처기업 대표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고졸 비중 남성 11.1%, 여성 30.7%), 이공계(특히 공학) 전공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 대졸자의 경우 남성은 65.7%, 여성은 18.0%가 공학 전공자이고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남성은 67.5%, 여성은 29.5%가 공학 전공자이다.

○ 정부 정책지원금 수혜경험을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은 R&D 자금과 융자(정책자금)를 지원받은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보증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남성보다 높다. R&D 자금 지원경험 비율은 남성 51.1%, 여성 43.0%인데, 보증서 지원 경험 비율은 남성 40.7%, 여성 53.4%이다.

○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인력 보유 비율이 낮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율이 남성 57.5%, 여성 45.8%로 11.7%p의 차이가 있다. 자연히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남성(14.2%)보다 여성(22.1%)이 더 높다.

2. 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 /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 R&D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기업 중에서 연구개발인력(조직)을 보유한 여성의 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여성 벤처기업 중에서 연구개발인력(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61.5%이다. 벤처기업, 혹은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기업), 1인 창조기업이 아닌 일반 여성기업은 7.3%만이 연구개

발인력(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 여성기업의 24.2%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성기업들이 자체기술개발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26.6%)”과 “개발인력 확보 곤란(16.0%)”이다.

○ 여성기업들이 정부정책을 활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49.8%)”이다.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롭다(20.2%)”거나 “신속한 지원이 부족하다(11.8%)” 등의 기타 의견은 그보다 훨씬 비중이 낮다. 그러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롭다(27-29%)”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인력(조직)을 보유한 여성기업(벤처기업 후보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 분포, 권역별 분포, 기업의 중점전략 및 자금투자분야 측면에서 일반 여성기업보다 여성 벤처기업에 훨씬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여성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활용실태

1)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인지 및 정보수집

○ 벤처기업확인제도나 지원제도를 인지하는 시점이 창업 이전보다 창업 이후가 더 많고, 관련 정보수집도 주로 창업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과 같이 창업 이후 일정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우대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해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정보수집 경로도 공식적인 경로(벤처기업확인기관 방문 및 문의, 벤처기업공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열람 등)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편적인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데 적절한 시점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여성대표의 경우에도 기술성 평가표나 평가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본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블로그 등에서 자료

를 구하는 등과 같이 공식적인 정보제공기관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벤처기업확인 신청 및 평가과정

○ 벤처기업인증의 주된 동기는 1)기술력을 평가받으려고, 2)회사운영의 기본적 요건이므로, 3)정부사업에 참여기회를 갖는 데 유리하므로, 4)홍보효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등이다. 상당수의 여성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과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기술성평가를 받다가 벤처기업인증도 함께 받고 있어, 보증/대출 이외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열의가 높지 않았다.

○ 벤처기업인증을 이미 받은 여성기업 대표나 아직 확인신청을 한 적 없이 벤처기업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기업 대표 모두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거의 모르고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대표(17명) 중에서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았거나 인터넷에서 설명자료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사례는 두 명에 불과했다.

○ 여성 중에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낮은데 여성 벤처기업인도 남성 벤처기업인에 비해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낮다. 이것은 벤처기업확인 평가에서 경영주의 기술능력을 평가받는 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영주의 대학 전공 및 직업경험이 해당기업의 기술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평가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3)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 벤처기업인증이 여성기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여성기업이 공통적으로 얻고 있는 효과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지원 R&D 사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 우수인력 확보, 세제혜택, 광고비 할인 혜택을 받은 여성기업들이 있다.

Ⅳ. 제도개선과제(안)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참고자료
		개선안	담당부처	
벤처기업 진입 이전 단계	-R&D활동은 벤처기업 진입을 위한 핵심요소이나 연구개발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한 여성기업은 8.4%에 불과 -중소기업청은 R&D사업 선정평가 시 여성기업에 가산점(1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5년에 여성전용과제를 별도로 운영	**1 여성기업 R&D지원정책 성과 모니터링 및 타부처 확대(p.113)**		
		①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참여활성화R&D과제' 운영성과 모니터링 * 지원대상, 지원규모, 여성고용증대효과, R&D 성과 등(타 부처 확산을 위한 정책모델로 활용가능성 검토)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2016. 2. 12. 기술개발과-193호), p. 19-20(가점 및 감점).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전용 과제' 2차 모집 공고문
	-여성기업의 자체기술개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개발자금의 부족(26.6%)이며 그 다음은 개발인력 확보 곤란(16.0%)임. -벤처기업 중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남성기업 51.1%, 여성기업 43.0%임.	**2 여성기업의 경력단절여성 R&D 인력 활용 지원확대(p.115)**		
		①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기관 유형별(대학, 정부출연(연), 민간기업연구소) 정규직 취업성과 모니터링 - 민간기업연구소의 정규직 취업성과가 높을 경우 민간기업연구소로의 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관 유형별 지원조건 차등화, 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6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참고자료
		개선안	담당부처	
		간기업연구소로 복귀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예산 상향 조정		고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여성기업 실태조사)
		② 여성벤처기업 또는 중견-중소 여성기업의 R&D 인력 수요 진단 (진단결과를 여성R&D인력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반영)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3 여성기업의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 활용 활성화(p.117)		
		① 정부출연연구소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지원제도)을 여성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관련단체를 통해 홍보 *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관 기술교류회 사례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지원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
	-중소기업을 위한 R&D 자금 지원사업과 인력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여성기업들이 잘 활용하지 못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대상 R&D 사업에 여성기업 참여율은 4-14% 수	**4 여성기업의 R&D 정보활용능력 제고 프로그램 확대(p.118)**		
		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여성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참고자료
		개선안	담당부처	
	준 -여성기업들이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49.8%)임.	성기업을 대상으로 R&D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기존의 여성기업 R&D 기획역량제고 사업과 달리 R&D 정보활용능력에 초점을 맞춤.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관련 사항이 포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수-지도사업 근거 포함.
		②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자금지원, 인력지원, 등)에 대한 여성기업의 인지도, R&D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의 전 과정에서 여성기업의 수요 / 애로사항 등을 조사 * R&D 정보활용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여성기업들이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인지시점이 늦고 벤처기업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잘 모름.	**5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정보제공 강화(p.120)**		
		①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확인 및 지원제도 교육 실시 *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에 우선 적용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동 센터의 기능으로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자료제공 근거 명시
		② 한국여성벤처협회를 통해 벤처기업확인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확인 및 지원제도 교육 실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③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기업을 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참고자료
		개선안	담당부처	
		상으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수요를 조사 후 지원 실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 단계	-벤처기업확인 신청 기업에 기술성 평가표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 부족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평가관련 내부규정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음.	**6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벤처인)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확대 (p.122)**		
		①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에 기술성 평가표 이외에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단 구성,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벤처기업확인업무세부지침(2014.10.22. 개정)」 공개 참조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확인 업무세부지침(2014.10.22. 개정)」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운용요령 (2016.4.5. 개정)」
	-여성대표자는 기술성 평가에서 전공 및 직업경력으로 인해 불리할 수 있음(남성에 비해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낮고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유관분야의 직업경력 적음). -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6:21)의「2015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의 25.2%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느끼고 있	**7 벤처기업확인 평가전문인력 풀의 여성비율 확대 (p.125)**		
		① 벤처기업확인 평가전문인력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벤처기업확인 신청 여성기업비율 이상으로 확보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확인 업무세부지침 (2014. 10. 22. 개정)」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운용요령 (2016. 4. 5. 개정)」

분 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참고자료
		개선안	담당부처	
	음(조금 느낀다 20.9%, 많이 느낀다 4.3%).			
	-평가결과에 불만이 있었거나, 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여성기업들이 있음.	**8 벤처기업확인 평가결과의 통지방법 보완(p.126)**		
		① 탈락한 기업에 평가항목별로 평가자 의견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안 마련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확인요령」 -벤처기업확인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의된 평가지침(요령)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 단계	-기업경영정보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여성기업은 투자유치에 소극적임. -투자유치는 자금확보 수단만이 아니라 투자기관으로부터 기업경영, 기술개발, 마케팅, M&A, 유관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임.	**9 여성기업 전용펀드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p.128)**		
		① 여성기업 전용펀드 운영 확대 (4차에 걸친 여성기업 투자펀드 운용 실적 검토 후 추가적인 펀드운영 계획 마련)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0조 -중소기업청 '15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p.14)
		② 벤처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한 우수 여성기업 사례 홍보 강화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배경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제2장. 선행연구 및 여성 벤처기업 지원제도 ····· 9
1. 벤처기업의 정의 ····· 11
2.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 현황 ····· 12
가.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 경과 ····· 12
나. 벤처기업 확인유형 및 신청절차 ····· 13
다.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가기준 ····· 15
라. 벤처기업 제외업종 ····· 21
3.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 ····· 23
가. 벤처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 23
나. 벤처(창업)기업 지원정책 ····· 25
다. 여성 벤처기업 지원정책 ····· 30
라. 벤처기업 우대제도 ····· 34
마. 여성기업 우대제도 ····· 39
바. 벤처기업확인제도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 42

제3장.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 ····· 45
1. 여성기업 현황과 추이 ····· 47
2.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최근 5-10년 간의 변화 ····· 49
3. 여성 벤처기업의 특징 ····· 59

가. 대표자의 인구학적 특성 ····· 59
나. 기업 일반 현황 ····· 61
다. 재무관련 특성 ····· 66
라. 기술 현황 ····· 69
마. 기업의 경쟁력 및 인프라 수준 ····· 70
바. 벤처기업확인제도 및 경영상 애로사항 ····· 73

제4장. 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와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 77
1. 여성기업의 R&D 참여도와 애로사항 ····· 79
2.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 82

제5장. 여성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활용실태 ····· 89
1. 조사대상자의 특징 ····· 91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인지 및 정보수집 ····· 92
가. 제도 인지 시점 ····· 92
나. 정보수집의 정확성 ····· 93
다. 정보수집 경로 ····· 95
3. 벤처기업확인 신청 및 평가과정 ····· 95
가. 벤처기업인증 동기 ····· 95
나. 인증에 어려움이 없었던 여성기업 사례 ····· 98
다.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던 여성기업 사례 ····· 100
라. 평가기준 관련 여성기업의 애로사 ····· 101
4.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 104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107
1. 연구결과 요약 ····· 109
가.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 ····· 109
나. 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110
다. 여성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활용실태 ····· 110

2. 벤처기업 진입 이전 단계의 지원정책 ····· 112
가. 정책제안의 배경 ····· 112
나. 정책제안 ····· 113
3.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 상의 개선방안 ····· 121
가. 정책제안의 배경 ····· 121
나. 정책제안 ····· 122
4. 벤처기업지원제도 활용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 127
가. 정책제안의 배경 ····· 127
나. 정책제안 ····· 128

참고문헌 ····· 131

표 목 차

<표 2-1>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 ····· 13
<표 2-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준요건 ····· 16
<표 2-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 평가표 ····· 17
<표 2-4> 연구개발기업 기준요건 ····· 19
<표 2-5>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평가표 ····· 19
<표 2-6> 벤처투자기업 기준요건 ····· 20
<표 2-7> 벤처기업 유형 및 기준요건 ····· 20
<표 2-8> 예비벤처기업용 기술성 평가표 ····· 21
<표 2-9>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22
<표 2-10> 주요 부처별 벤처·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 24
<표 2-11> 2016년 벤처·창업 지원 사업 ····· 28
<표 2-12>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지원 내용 ····· 31
<표 2-13> 여성 전용 R&D 과제 신청 자격 ····· 34
<표 2-14> 벤처기업 우대제도 ····· 35
<표 2-15> 여성기업 확인 현황 ····· 39
<표 2-1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 40
<표 2-17>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 40
<표 2-18> 여성기업 보증 지원실적 ····· 40
<표 2-19> 여성기업 우대지원 내용 ····· 41
<표 3-1> 사업체 종사자수별 남녀사업체의 분포 ····· 48
<표 3-2> 업종별 여성사업체 비중 ····· 48
<표 3-3> 전국사업체 및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 비중 비교 ····· 51
<표 3-4> 업종별 남녀 벤처기업 수 ····· 51
<표 3-5> 업종별 남녀 벤처기업 비중 ····· 53
<표 3-6> 남녀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 ····· 54
<표 3-7> 전국사업체 및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 ····· 55

<표 3-8> 남녀 벤처기업의 업력 분포 ····· 57
<표 3-9> 남녀 벤처기업의 벤처유형 ····· 57
<표 3-10> 지역별 벤처기업 수 ····· 58
<표 3-11> 벤처기업 대표자의 배경변인별 특성 ····· 60
<표 3-12> 업종별 벤처기업 분포 ····· 62
<표 3-13>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성이 가장 큰 기술 분포 ····· 62
<표 3-14> 규모별 벤처기업 분포 ····· 63
<표 3-15>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분포 ····· 64
<표 3-16>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여부 ····· 64
<표 3-17>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현황 ····· 66
<표 3-18> 벤처기업의 재무 현황 ····· 67
<표 3-19>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현황 ····· 68
<표 3-20> 투자처별 총 투자액 ····· 68
<표 3-21>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평균건수) ····· 69
<표 3-22>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여부 ····· 70
<표 3-23> 경쟁력 비교 ····· 71
<표 3-24>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효과 ····· 73
<표 4-1> 여성기업의 유형별 비중 ····· 79
<표 4-2> 여성기업 유형별 연구개발인력(조직) 보유 비율 ····· 80
<표 4-3> 여성기업 유형별 자체기술개발 시 애로사항(1순위) ····· 80
<표 4-4> 여성기업 유형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 81
<표 4-5> 여성기업 유형별 정부정책활용 시 가장 어려운 점 ····· 82
<표 4-6> 여성 벤처기업 후보군과 기타 비교대상 여성기업 ····· 83
<표 4-7> 업종별 분포 ····· 84
<표 4-8> 권역별 분포 ····· 85
<표 4-9> 대표자 연령대별 분포 ····· 86
<표 4-10> 대표자 전공분야별 분포 ····· 86
<표 4-11> 중점적 기업전략 ····· 87
<표 4-12>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금투자분야 ····· 88

<표 5-1>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 91
<표 5-2> 벤처기업인증의 동기 ····· 97
<표 5-3> 벤처기업확인 신청에 어려움이 없었던 여성기업 사례 ····· 99
<표 5-4> 여성기업의 벤처확인인증 노력 사례 ····· 100
<표 5-5>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 104
<표 6-1>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및 과제 수(2015년) 114
<표 6-2> 벤처인 홈페이지의 “벤처확인”의 정보제공 내용 ····· 122
<표 6-3> 벤처기업확인평가 시 지식기술수준 및 기술경험수준 평가기준 ·· 124

그 림 목 차

[그림 2-1]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 14
[그림 2-2]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 15
[그림 3-1] 여성사업체 수 및 비중 추이 ····· 47
[그림 3-2] 여성 벤처기업 수 및 비중 추이 ····· 50
[그림 3-3]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 65
[그림 3-4] 벤처 인프라 수준 ····· 72
[그림 3-5] 경영상 애로사항 ····· 75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정부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생산가능인구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서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여성 고용률은 2000년 47.0%에서 2015년 49.9%로 약 3%p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성 고용률이 같은 기간에 70.7%에서 71.1%로 0.4%p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여성 고용률이 더 크게 증가했지만 남성 고용률과의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큰 상태이다[1].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창업과 창직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에 처음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2]을 제정하여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도 기업활동분야는 이공계 연구개발분야와 더불어 여성 진출이 부진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공계 연구개발분야의 여성 진출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3]에 근거하여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의 기업활동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벤처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사업마다 각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진단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DB. 경제활동>인력현황>연령별 경제활동인구(성별). (https://gsis.kwdi.re.kr/gsis/kr/tblInfo/TblInfoList.html?vw_cd=MT_ZTITLE, 검색일: 2016.12.15.)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12&efYd=20160930#AJAX, 검색일: 2016.9.1.)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21호, 2015.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982&efYd=20150203#AJAX, 검색일: 2016.9.1.)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우선권을 주거나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다 해도 크게 혜택을 받을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우대정책이 안정적인 창업과 기업활동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여성기업들이 많다.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사업체 중에서 여성 사업체 비율은 37.7%에 이르지만, 벤처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의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8.2%에 불과하다[4]. 이 통계로 보면 여성기업의 벤처진입이 남성기업에 비해 한층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여성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나 우대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기업가정신 및 개발원[5](2015)의 여성기업가정신 지수(Female Entrepreneurshi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점수는 40.1점으로 전체 77개국 중에서 43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국(82.9점), 호주(74.8점), 영국(70.6점) 순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59.8점(16위)으로 가장 높고 대만(53.4점, 26위)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일본(40.0점, 44위)과 중국(38.3점, 48위)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각국의 2015년 여성기업가정신 지수와 세계기업가정신 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를 교차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여성기업가정신 지수(43위)가 세계기업가정신 지수(27위)보다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여성기업가정신 지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high potential)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벤처창업 혹은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기술창업과 기업활동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임에도 여성벤처기업은 물론 여성기업에 관한 선행연구도 매우 적어서 여성기업의 벤처진입에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지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이 여성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

4) 제3장의 분석결과 참조.

5)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GEDI(https://thegedi.org/, 검색일: 2016.9.1.)

가, 여성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벤처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벤처기업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과 우대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에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1) 선행연구 및 여성 벤처기업 지원제도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주로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에 관한 지원정책, 그리고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벤처기업 관련 정책자료 및 법령 등을 통해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운영 현황(제도 도입 경과, 확인 유형 및 신청 절차, 평가 기준, 제외 업종 등), 벤처기업지원의 법적 근거, 벤처기업 지원정책과 우대정책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2)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분석은 1)전국 사업체 통계와 벤처기업 통계의 상호비교, 2)벤처기업 내에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비교, 3)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벤처기업 내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전국 사업체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여성사업체에서 여성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남성 벤처기업과 비교할 때 여성 벤처기업의 특징, 시계열별 여성 벤처기업의 특징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3) 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와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벤처기업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기술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므로, R&D활동은 벤처기업 진입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R&D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쉽고, 기업들은 R&D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벤처기업인증을 받고자 한다.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할 때 여성기업의 벤처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R&D활동과 투

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와 R&D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R&D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은 향후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인증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4) 여성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활용실태

여성기업으로 벤처기업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했으나 평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기업, 그리고 향후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인 기업 등 총 17개 기업의 여성대표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와 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즉,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한 정보수집 경로 및 정보수집의 문제점, 벤처기업확인 신청 동기, 평가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5) 정책제안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 즉 1)벤처진입 이전 단계의 지원정책, 2)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3)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초점이 벤처기업 진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있으므로 벤처기업 진입 이후의 지원제도 활용 측면보다는, 진입 이전 단계와 확인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자료 분석

벤처기업의 정의와 여성 벤처기업의 특성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벤처기업지원에 관련된 법령, 벤처기업확인제도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정부부처의 정책자료(각종 기본계획, 사업공고문,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보도자료 등), 벤처기업확인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료 및 내부 규정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통계자료(micro data) 분석

통계자료 분석은 1)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 분석, 2)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와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 3)정책대안의 구체성 제고 등을 위해 수행되었다. 통계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01-2014) 원자료, 2)벤처기업공시시스템(벤처인)의 벤처기업공시 DB 통계자료, 3)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의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4)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15년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5)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통계 DB이다.

전국사업체조사는 매년 조사되며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6)]..

벤처기업공시 DB 통계자료는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모집단에 관한 통계자료이다. DB 원자료를 직접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 즉,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자의 성별 벤처기업 수, 그리고 2010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업종별, 업력별, 벤처기업확인유형별, 지역별 남녀 벤처기업 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받았다. 그 결과로 이 연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벤처기업공시 DB를 활용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되었다.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14년 말 벤처확인기업 29,844개(예비벤처기업 제외)를 모집단으로 삼은 2,227개 벤처기업에 대한 표본조사이다(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 2015). 조사내용은 1)경영성과 및 재무 현황, 2)인력 및 조직 현황, 3)기업 일반 현황, 4)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 4)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5)마케팅 및 해외진출 현황, 6)제휴 및 협력 현황, 7)벤처캐피탈 및 M&SA 현황, 8)공정거래 질서 현황, 9)벤처기업 지원제도 및 교육, 경영 애로사항 등이다. 이 연구는 원자료와 함께 제공된 가중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성기업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5년 조사는 사업체 전체가 아니라 기업체로 한정했다. 즉, 전국사업체조사(2013년 말 기준)에서 여성이 대표자인 53,504개 기업체를 모집단으로 삼아 4,464개 여성기업을 표본조사 하였다(중소기

---

6)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조회>전국사업체조사(http://meta.narastat.kr/, 검색일: 2016.12.15.)

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5). 조사내용은 1)기업 일반 현황, 2)재무관련 현황, 3)경영성과 및 경영활동 사항, 4)인사 노무 관리, 5)교육 및 연수, 6)여성기업인의 특성 및 애로사항, 7)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8)여성기업 관련 제도, 9)여성 창업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통계 DB는 정책제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2015년에 정부부처별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와 과제수 규모를 추출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3)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여성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여성기업 대표 총 17명(벤처기업확인 완료 9명, 신청했으나 실패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 대표 3명, 신청 준비 중(3명)이거나 희망하는 여성기업 대표(2명))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표의 특성은 제5장의 <표 5-1>에서 제시하였다. 조사는 주로 각 사업체를 방문하여 여성대표를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조사대상자는 집단면접을 먼저 실시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보강하는 방식을 취했다.

4) 자문위원회 운영

자문회의는 연구의 초기단계에 연구방향의 구체적 설정, 면접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여성기업의 벤처진입 애로사항의 재확인,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해 운영되었다. 자문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여성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투자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활동 전문가 혹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임원사 대표들이다.

제2장

선행연구 및 여성 벤처기업 지원제도

1.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7], 벤처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체의 범위에 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다. 벤처기업의 정의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진주가 "모험기업"으로 번역하여 정의한 것인데 "기술수준이 높은 신규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술창업인 또는 기존기업인이 창업 또는 점진적 기술축적을 통해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이익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이춘우 2005:321, 재인용). 이장우·장수덕(1998:455)은 벤처기업의 핵심속성에 고위험, 혁신성, 도전성과 같이 쉽게 정의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관한 엄격한 개념적 정의보다 연구목적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국가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만 5년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성태경 외 1998:174). OECD는 벤처기업을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홍성도 1998 ; 이춘우 2001:9 재인용). 대만은 '촉진산업조례'에서 벤처기업을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양인숙·김난주 2005:11).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벤처기업'을 상당히 폭넓게 파악하고 있으며,

---

7)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에 관한 용어로 벤처(venture), 벤처비즈니스(venture business), 비즈니스 벤처(business venture), 기업가(entrepreneur), 기업가적 기업(entrepreneurial firm/entrepreneurial venture), 고기술 기업(high technology business), 신기술기반 기업(new technology-based firm), 모험적 기업(risky business), 창업기업(start-up company), 벤처캐피탈 투자기업(venture capital-backed company)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연구개발 집약형 기업, 디자인개발 집약형 기업, 지식 집약적인 중소기업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이춘우, 2005:319-321). 우리나라에서는 이진주·라중덕(1985)이 벤처비즈니스를 모험기업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그 밖에 벤처비즈니스,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 집약적 기업, 모험기업 등이 사용되다가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로 정리되었다(이춘우, 2005:321).

시장에 의해 정의된 기업 외에도 정책적 판단 등으로 인해 인정되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김기완 2011:13).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그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에는 “미국의 벤처캐피털 투자로 접근하는 관점과 유럽이나 일본의 연구개발집약형 기업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제공자인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가 벤처기업확인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어 벤처육성이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나타낸다(김기완 2011:12-13). 이춘우(2005:315)는 정부주도의 벤처산업 지원정책을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벤처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상으로 명시하였다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의되는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 등의 투자에 의한 고위험-고수익을 속성으로 하는 기업 형태’라는 일반적인 벤처기업과는 다른 속성을 보이고 있다(김기완 2011:6).

2.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 현황

가.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 경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지원제도는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법은 10년 기한의 한시법이었는데 2007년에 유효기간이 10년 더 연장되었고 내년에 일몰을 앞두고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일부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8]).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정 당시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시점에서 신기술기업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거나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

8)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검색일: 2016.8.24.)

발된 기술을 사업하는 기업들을 포괄하는 등 인정의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9] 이는 1990년대 후반, 당시 벤처캐피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들을 지원을 하여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김기완 2011:12-13).

2002년에는 부실 벤처기업이나 벤처 비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및 경영능력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강화했다(김기완 2011:16). 2006년에는 벤처기업 평가체계를 간소화하고, 이전까지 존재하던 신기술기업 유형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대체(김기완 2011:16)하는 한편,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기업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벤처기업 확인유형 및 신청절차

현재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1)벤처투자기업, 2)기술평가보증기업, 3)기술평가대출기업, 4)연구개발기업, 5)예비벤처기업,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확인유형별 벤처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이 81.1%에 달하고, 기술평가대출을 받은 기업은 9.4%, 연구개발기업은 5.8%이며 벤처투자기업은 3.4%, 그리고 예비벤처기업이 0.2%를 차지한다(벤처인 홈페이지[10]).

<표 2-1>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 수	1,104	1,911	26,521	3,082	73	32,691
비율(%)	3.4	5.8	81.1	9.4	0.2	100

자료: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자료<벤처통계시스템<총괄현황(기준일: 2016.10.23.).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data/C61100.do, 검색일: 2016.10.24.)

9) 2002년 벤처기업법 개정 이후 '신기술기업'은 기술평가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변경되었다(김기완 2011:11).
10)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자료<벤처통계시스템<총괄현황(기준일: 2016.10.23.)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data/C61100.do, 검색일: 2016.10.24.)

벤처 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는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진다.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벤처인에 회원가입을 하고 가장 적합한 벤처 확인유형을 선택한 후 신청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정보를 벤처인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벤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만 업로드하면 된다.

자료: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확인<벤처확인신청절차.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2000.jsp, 검색일: 2016.8.24.)

[그림 2-1]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이처럼 확인유형 및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중소기업이 입력한 벤처 확인 신청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기관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그림 2-2]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확인기관별로 평가가 다르게 진행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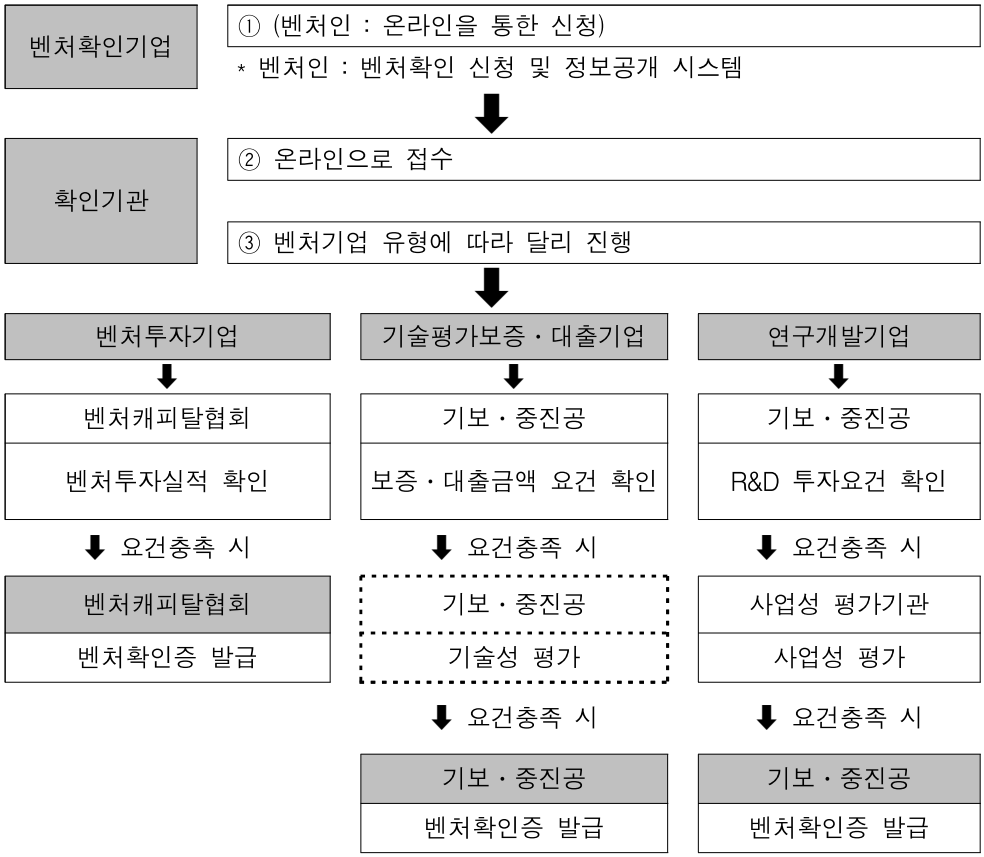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2006),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확인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06.6.5.), p.5.

[그림 2-2]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다.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가기준

1)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유형의 평가기준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유형은 전체 벤처기업의 90.5%(기술평가보증 81.1%, 기술평

가대출 9.4%)를 차지하고 있다(<표 2-1>). 이 유형의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아야 하는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벤처확인을 위해 보증·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9년 벤처기업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은 보증·대출 결정금액을 부여하여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현실적으로 보증·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인 기업은 관련 금액 및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개선했다(중소기업청 2009:1-2).

<표 2-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준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효기간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보증·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기보·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효기간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자료: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확인<벤처확인요건.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검색일: 2016.8.21.)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기술성 평가표는 경영주의 기술능력(25점), 기술성(52점), 사업성(23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표 2-3). 심사항목별로 배점이 있고 등급은 A부터 E까지 다섯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점수는 A 등급을 받으면 배점의 5/5를 부여하고 가장 낮은 E 등급을 받으면 배점의 1/5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기술성(52점 만점)에서 최소 31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점(100점 만점) 65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의 평가표는 2014년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벤처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술성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이어서 평가항목 중 기술성 분야의 배점이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 증가하였다(중소기업청, 2014a).

<표 2-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18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확장성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23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합 계			100		

주)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 3/5, D: 배점× 2/5, E:배점× 1/5) 부여
자료: 중소기업청(2015a), 벤처기업확인요령(고시 제2015-42호), p.17.

2)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은 창업 후 업력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르나 모두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창업 3년 이상인 경우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10%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평가 결과가 65점 이상이어야 한다(<표 2-4>).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평가표를 보면 평가항목이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60점)과 사업계획의 타당성(4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5>). 이전에는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평가표에도 '경영주 기술능력' 등의 평가항목이 있었으나, 2014년 개선방안에 의해 경영주 평가 및 재무성 평가 항목을 폐지하고 순수 사업성 평가 위주로 간소화하였다(중소기업청 2014a:3).

<표 2-4> 연구개발기업 기준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효기간
연구개발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창업 3년 이상 기업: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10% 이상 ②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연구개 발비 비율 적용 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사업성 평가표 65점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2년

자료: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확인<벤처확인요건.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검색일: 2016.8.21.)

<표 2-5>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사업성 (100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30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20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20		
합계			100		

주)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부여
자료: 중소기업청(2015a), 벤처기업확인요령(고시 제2015-42호), p.16.

3)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 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표 2-6> 벤처투자기업 기준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효기간
벤처 투자 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 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 회사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2년

자료: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확인<벤처확인요건.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검색일: 2016.8.21.)

4) 예비벤처기업

예비벤처기업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으로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표 2-7> 벤처기업 유형 및 기준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효기간
예비 벤처 기업	1.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 보증기금	2년

자료: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확인<벤처확인요건.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검색일: 2016.8.21.)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성 평가표는 경영주의 기술능력(30점), 기술성(40점), 사업성(30점)으로 구성된다(<표 2-8>). 이것은 <표 2-3>의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 평가표를 예비벤처기업에 적절한 방식으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예비벤처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심사항목들(기술인력관리,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개발전담조직·인력, 기술의 선도성-완성도-확장성, 생산시설·인력 확보수준,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예비벤처기업에 적합한 심사항목(기업가 정신 및 혁신능력, 기술의 우수성, 자금조달능력,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으로 대체하였다.

<표 2-8> 예비벤처기업용 기술성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30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9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업가 정신 및 혁신능력	12		
소 계			30		
기술성 (40 점)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12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13		
	기술의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10		
		자금조달능력	5		
소 계			40		
사업성 (30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4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7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5		
	수익전망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6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4		
소 계			30		
합 계			100		

주)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부여
자료: 중소기업청(2015a), 벤처기업확인요령(고시 제2015-42호), p.18.

라. 벤처기업 제외업종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벤처기업은 앞에서 살펴본 벤처기업 유형별 기준요건을 갖추고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벤처기업 제외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6개 세세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6개 세세업종),

오락업 및 문화업(4개 세세업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7개 세세업종)에서 모두 23개 세세업종이다.

벤처지원 제외업종은 국민경제 자문회의 건의사항 및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으로 벤처기업 지원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45개에서 23개로 감소하였다. 즉, 음식점업의 13개 세세업종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8개 세세업종 등 22개 업종에서도 벤처기업확인이 가능해졌다(중소기업청 2015a:1).

<표 2-9>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업 종	코드번호(세세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여관업	55112
	그외 기타 숙박업	55909
	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비알콜 음료점업	562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1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기타부동산임대업	68119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1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129
오락업 및 문화업	골프장운영업	91121
	노래연습장운영업	91223
	무도장운영업	91291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91249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이용업	96111
	두발미용업	96112
	피부미용업	96113
	기타미용업	96119
	욕탕업	96121
	마사지업	96122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129

자료: 중소기업청(2015a), 벤처기업확인요령(고시 제2015-42호), p.8,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3.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

가. 벤처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벤처·창업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3년 현 정부의 '창조경제실현계획'이 발표되고, "벤처·창업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중소기업청 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 부처로 관련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R&D는 미래창조과학부, 벤처·창업지원은 중소기업청, 기술이전·사업화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벤처·창업지원 관련 주요 정책이 분산, 추진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12-14).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법적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으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벤처기업의 정의 및 요건과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자금 공급,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 입지 공급의 원활화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금 공급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방법 및 이를 위한 투자조합(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전문회사·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 특례의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둘째,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주식 교환 및 매수, 기업 합병 등에 대한 특례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겸임·겸직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입지 공급을 위한 신기술창업·벤처기업 집적시설, 실험실공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특례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127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32&efYd=20160930#0000, 검색일: 2016.9.1.)

<표 2-10> 주요 부처별 벤처·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부처	법적근거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자료: 임길환·정유훈(2014),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p.11; 나성현 외(2014), 벤처·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p.113 참조.

한편 중소기업 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2]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및 등록,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시책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3] 역시 중소기업 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4]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20%EC%A7%80%EC%9B%90%EB%B2%95#undefined, 검색일: 2016.9.1.)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3863호, 2016.1.27.,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403&efYd=20160127#AJAX, 검색일: 2016.9.1.)

1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016호, 2015.1.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389&efYd=20150120#0000, 검색일: 2016.9.1.)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융합 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등 지원 내용이 법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15]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6]에 의거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17]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등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18]도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19]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나. 벤처(창업)기업 지원정책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창업 기업 지원정책은 <표 2-11>에서 보는 바와

---

15)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99&efYd=20160930#0000, 검색일: 2016.9.1.)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15&efYd=20141119#0000, 검색일: 2016.9.1.)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3736호, 2016.1.6.,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71&efYd=20160407#0000, 검색일: 2016.9.1.)

18) 「산업융합촉진법」[법률 제12609호, 2014.5.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31&efYd=20140520#0000, 검색일: 2016.9.1.)

19)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204&efYd=20161004#0000, 검색일: 2016.9.1.)

같이, 창업준비 지원정책, 창업 사업화 지원정책, 성장지원 정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ES리더 양성 사업'은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 YES리더를 활용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특강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은 창업에 관심있는 여대생들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마인드를 고취시키고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게임벤처 3.0은 게임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여 사무공간, 인프라,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연구기관의 일정지역 내에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특례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학의 집적지역 내에 대한 특례로는 건축제한 완화,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4개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총 328개 기업이 입주하여 1,427명을 고용하고 1,52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예산보조 없이 특례제도만 유지하여, 자율적으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추진을 희망하는 대학·연구소에 한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6:63).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은 선배 벤처기업 내에 예비창업자를 1~2년 입주시켜 사업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선발된 예비창업자가 선도벤처기업 내에 입주하여 시제품 제작, 판로·마케팅, 멘토링 등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선도벤처 기업가와 예비창업자간 협력비즈니스를 통한 투자·아웃소싱, 공동마케팅 등을 연계·지원한다. 선도벤처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제조업의 경우) 혹은 50억원(비제조업의 경우) 이상인 기업으로 창업 준비공간,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국내 판매망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기업이다(중소기업청 2016:55).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운영'은 ICT 기반 지식서비스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우

수 청년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창업, 개발 및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과 성장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신설되었다. 2013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옴니텔과 경북대학교, 2014년 추가 신설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및 울산대학교는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에 필요한 개발실, 교육장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사관학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최종 420개 창업팀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1,235개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중소기업청 2016:68-69).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은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수출초보 벤처기업에 대해 선도 벤처기업이 해외 수출선 발굴 및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대상 벤처기업을 밀착 지원으로 수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2015년에는 20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에는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중소기업청 2016:230).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중소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K-ICT 본투글로벌센터 운영을 통해 ICT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진출·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지원 및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벤처1세대 멘토링 지원사업으로 창업초기기업, 대학창업동아리 등 1,689개사(팀) 대상 총 8,365건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외 엑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한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SW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창업·해외진출까지 지원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6:367-368).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유망기술개발지원은 ICT분야의 신시장 창출 및 성장 기반 제공을 위해 중소·벤처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반 지원으로 100개 과제에 310.37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보고되었다(중소기업청 2016:370).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은 벤처기업들의 부정기적인 소규모 개별모집 방식보다는 각 기업별로 수요를 모으고 기간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기업들의 자격을 매출액, 성장률, 연봉수준이 높은 우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하여 청년 및 대학생 등의 관심 유도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5년 벤처기업 1,276개사가 3,269명을 채용하였고, 2016년 채용 목표인원을

3,38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훈련 지원사업은 벤처기업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5년에 총 606명을 교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6:229).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벤처 3.0운영, 해양수산부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상용화 성과 창출 유도를 위한 과제 지원, 방위사업청의 국방벤처기업 육성 지원, 특허청의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투·융자 지원 등이 있다(중소기업청 2016).

<표 2-11> 2016년 벤처·창업 지원 사업

(단위: 억원)

성장 단계	주요정책	사업명	구분		예산	소관 부처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 준비	창업 교육	YES리더 양성	초중고 및 대학생	벤처기업협회	8.8	중기청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2	중기청
	창업 시설·공간	게임벤처3.0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8.9	문체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대학·연구기관의 일정지역 내에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 제공을 희망하는 대학·연구소		-	중기청
	멘토링·컨설팅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턴쉽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미래부
창업 사업화	사업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등	70	중기청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31.5	중기청
		여성창업경진대회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창업기업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0.9	중기청

성장 단계	주요정책	사업명	구분		예산	소관 부처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여성 예비(벤처) 창업자	(사)한국여성 벤처협회	5	중기청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학생 등	공공기관	14	미래부
성장 지원	R&D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ICT창업·재도전 분야)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설립 기업에 한함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30	
	판로·해외 진출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학생 등	공공기관	14	미래부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수출 초보 벤처기업	벤처기업협회		중기청
	인력	벤처기업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중기청
	행사·네트워크	창조경제박람회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창업진흥원	4	중기청
재도전	회생·재창업 지원	재창업자금	사업 실패 후 재창업 준비중인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기업	중소기업진흥 공단	1,000	

자료: 중소기업청(2015b), 창업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2016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나성현 외(2014), 벤처·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중소기업청(2016),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등을 재구성.

다. 여성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청은 한국여성벤처협회를 통해 ①여성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②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③여성특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④여성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우선 '여성벤처창업 활성화지원'은 여성(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선배 CEO의 밀착 코칭을 통해 사업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성벤처창업 혁신아카데미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화 과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창업캠프이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1개월 간의 창업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한 후 비즈플랜 경진대회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2단계 지원은 여성벤처 선배 CEO와 1:1매칭을 통한 밀착 코칭(4개월)이다. 이를 통해 1단계에서 발전시킨 사업아이디어를 시장맞춤형 사업계획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여 기술연구, 시장분석, 샘플제작 및 테스트 등과 같은 시장 연계형 사업화 과제 해결을 지원한다.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여성 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와 창업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여성벤처창업 혁신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희망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창업캠프 참여자 수는 1,857명이고 2단계 밀착 코칭 서비스 수혜자는 302명, 사업화 과제 해결 수혜자 수는 194명이다.

---

20) 이하의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에 관한 소개는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2016년 9월 13일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2-12>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지원 내용

구분	구성	내용
비즈플랜 캠프	-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을 구체화·고도화하기 위한 전문 분야별 특화된 창업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운영	창업기초역량, 사업화 추진역량, 시장경쟁력 역량, 성장기반 구축역량 등 4개 모듈로 구성된 실습형 프로그램을 총 44시간 내외로 구성
	- 1차 비즈플랜 경진대회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참가 자격 부여
선배CEO 밀착코칭	- 선배CEO 밀착코칭	4개월 이내, 월 4회 기준으로 수행(단, 선배CEO 및 예비창업자 상황에 따라 수행일수 조정 가능(최소 2회, 8시간 이상)
	- 네트워킹 프로그램	선배CEO와 예비창업자 간 정보교류 및 친밀도 향상을 위한 1박 2일 프로그램
사업화 과제해결	- 사업비 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국내외 시장조사, 특허 등 지재권 출원·등록, 제품화 가능성 점검 및 샘플제작, 마케팅 지원
IR 지원	- 기업홍보 및 자금 조달 지원	2차 비즈플랜 경진대회 평가 결과에 따라 IR컨설팅 지원, IR행사(성과발표회 병행) 개최
수료	2차 비즈플랜 경진대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게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자료: (사)한국여성벤처협회(2016), 2016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운영지침, p. 9-10.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은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이다.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최대 9천만원)을 지급하며 선도벤처기업을 통한 창업공간, 기술-경영 자문 및 협업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창업인프라 구축,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업협력을 위한 워크숍, 스타트업 아카데미(사업계획, 경영일반, 마케팅 등), 창업자 및 제품홍보, 스타트업 IR,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예비)창업자 72개사를 선정 및 지원하여 창업률 100%, 생존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특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2016년 6월부터 신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여성 1인 창조기업 및 3개월 이내에 창업 가능한 예비 여성창업자이다. 입주공간으로는 지정석 15개실 및 고용석(5인) 1개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은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라이프케어,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 해외진출 희망 여성 벤처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수출컨소시엄사업과 해외전시회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출컨소시엄사업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사전지원)는 사전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공동 홍보물 제작, 해외마케팅 홍보,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등이다. 2단계(현지지원)는 수출 상담 및 시장조사, 현지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 지원 등인데 주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와 베트남(호치민)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해외 전시회사업으로는 중국의 소비재 분야 국제박람회에 우리나라 여성 벤처기업 제품이 참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결과로 2015년에 10개 회사가 약 85억원의 계약을 달성하였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위에서 소개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이외에도 협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벤처기업을 지원하는데, 대표적인 자체 프로그램으로 '여성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벤처 친화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공공기관 구매상담회'가 있다. '여성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여성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및 기업가정신 제고, 해외 규격인증 교육, R&D기획역량 강화 교육,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전략적 활용 교육, 엔젤 및 VC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이다. '여성벤처 친화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협회 임·회원사 및 예비벤처기업인과 정부, 유관기관,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유관기관의 주요정책 및 협력 프로그램을 여성 벤처기업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관방문 간담회, 여성벤처업계 정책제언 간담회 등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에게 여성 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여성기업인의 제언, 여성기업 제품소개 PT발표 및 제품 전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1:1 구매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여성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성기업 전문 투자펀드[21]를 조성하였다. 2006년 당시 100억원 규모(모태펀드 50억원)로 처음 결성하였으나 성과가 좋지 않았고 8년만에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여성이 최대 주주이거나 여성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성기업 펀드'로 100억원을 조성하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200억원씩 총 500억원(정부 300억원, 민간매칭 2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고, 초과수익도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민간재원 유입 촉진 조치도 마련했다(중소기업청 2014b:4-14). 이에 따라 2015년에는 145억원, 2016년 145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6.2:17).

한편 여성 전용 R&D 지원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계획도 담고 있는데, 2016년 102억원 내외로 개발기간 1년, 1억원 이내의 단기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전용 R&D 자금은 2015년 중소기업청과 여성가족부과 시범사업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것이다.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여성기업이 열악한 데다, 가점만으로는 실질적인 R&D 참여 확대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전용과제 신설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 전용 R&D 사업은 중기청이 R&D 자금 지원 및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R&D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의 대상은

21) 현재 여성기업 펀드는 여성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표이사인 기업, 또는 임직원 가운데 여성비율이 35%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에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약간 내용 변경을 하였다. 모태펀드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이 나머지 45억원의 투자자금만 모으면 되는 형식으로, 2015년 하반기, 여성기업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로 수림창업투자가 선정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수림창업투자는 상반기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와이케이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수젠텍, 엠시드, 티씨이, 아이브이웍스 등에 총 72억원을 투자했다. 최근에는 방사성 표지화합물 제조 전문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인 큐라켐에 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수림창업투자는 본 회사가 선정된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의 R&D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하고, 여성기업·청년기업을 발굴해 엑셀러레이팅과 투자까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벨 2016.7.26.).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신규고용 중소기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2인 이상)이다. 이들에게는 원활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하며, 여성 연구자 및 CEO는 관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중소기업청·여성가족부 2015:3).

<표 2-13> 여성 전용 R&D 과제 신청 자격

구분	상세조건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 -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을 신규고용하였거나 고용예정인 기업	-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신규고용 1인 이상, 해당 R&D과제 참여 조건 -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 -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우대배점)	- 최근 3년 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경진대회 수상 경험이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최대 3점)

자료: 중소기업청(2015c),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 전용 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58호, p.2.

또한 여성 창업기관이 대학,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도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R&D분야 여성인력의 산업체 복귀, 멘토링 등에 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청 2016.2:17).

라. 벤처기업 우대제도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창업, 입지, 금융, 조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2년마다 벤처확인 등록을 거쳐 벤처기업을 유지한다면 대부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창업 관련 지원은 창업 후 3~5년까지로 한정된다.

이 중 벤처기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투자재원 공급에 따른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와 벤처 창업 시 세제 지원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법인세 및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기타 연구개발사업, 융자 및 보증 등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하여 약간의 우대를 하는 수준이다(김종운·김홍기 2013:35).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4> 벤처기업 우대제도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3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 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2] (한국거래소)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 센터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자료: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지원<벤처기업 우대제도.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검색일: 2016.8.21.)

2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http://law.krx.co.kr/las/TopFrame.jsp, 검색일: 2016.8.24.)

1) 창업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및 겸임·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를 주어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6조, 제16조2).

2) 세제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3]은 조세에 대한 특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24], 「지방세특례제한법」[25],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창업 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간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3) 금융 지원

벤처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의 기준이 하향 적용되고,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상장심사 시 기업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나 벤처기업은 자기자본 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이다.

---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127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32&efYd=20160930#0000, 검색일: 2016.9.1.)
2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204&efYd=20161004#0000, 검색일: 2016.9.1.)
25) 지방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18&efYd=20160930#AJAX, 검색일: 2016.8.24.)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운용하는 것이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때 벤처기업은 기술혁신분야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기준에 의해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청 2016.10.12.:1-2).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규정」[26]에 따르면, “기술혁신선도형기업[27]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며, 특히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는 중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은 보증한도 30억원에서 확대된 50억원 이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제16조).

4) 입지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8]에 따르면, 교수·연구원, 벤처기업의 창업자의 실험실공장[29] 설치가 허용되며(제18조의 2),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도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제18조의 3).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내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제21조). 한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30]제 58조).

---

26)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기보소개<경영공시<인사 및 조직현황<내부규정<기술보증규정 (http://www.kibo.or.kr/src/pds/kbz900.asp?keyword=4, 검색일: 2016.9.30.)

27)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은 기술보증규정 제3조 제15항의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및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인증획득기업, 기술관련 수상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술력이 인정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기술보증기금, 우선지원 대상 기술기업 분류기준, 제12조).

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127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32&efYd=20160930#0000, 검색일: 2016.9.1.)

29)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5) 특허 지원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특허법 시행령」[31]제9조).

6) 마케팅 지원

벤처기업의 경우 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998년부터 중소기업의 방송광고비를 70%까지 할인해주고, 광고마케팅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2,214개 업체에 총 1,885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중 6개월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원 협의회에서 심사,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2]).

마. 여성기업 우대제도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2005년부터 수립되고 있는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방향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이다(중소기업청·(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6:10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총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군을 구분하여 포함(물품과 용역은 각 5%, 공사는 3% 이상)하고 의무적으로 계획한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구매 참여를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18&efYd=20160930#AJAX, 검색일: 2016.8.24.)
31) 특허법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4188&efYd=20150819#AJAX, 검색일: 2016.8.24.)
3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사업.
(https://www.kobaco.c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kobaco/businessintro/business/business_venture.xml, 검색일: 2016.9.1.)

희망하는 여성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확인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성기업 확인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공공구매 의무화 시행에 따라, 2015년에는 8,153건의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2014년 대비 9.2%(686건) 증가하였고, 공공구매 실적도 7.14조원으로 전년 대비 30.1%(1.65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16a:277).

<표 2-15> 여성기업 확인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신청	3,569	2,968	5,235	8,767	10,080
발급	2,921	2,583	4,540	7,467	8,153
누적	5,317	7,685	9,977	14,427	19,809

자료: 중소기업청(2016a),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p.277.

<표 2-1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99.8	106.4	113.0	111.5	119.2
여성	259	3.41	4.48	5.49	7.14
비율	2.6	3.2	4.0	4.9	6.0

자료: 중소기업청(2016),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p.277.

또한 정부는 2015년, 여성기업 2,153개 업체에 4,160억원의 정책자금을, 신용보증은 89,060억원을 지원하였다(중소기업청 2016a:277). <표 2-17>과 같이, 여성기업 정책자금 실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 불과하며, 신용보증의 여성기업 지원실적(<표 2-18>)도 신용보증 10.5%, 기술신용보증 7.6%, 지역신용보증 38.1%로, 특히 기술신용보증의 여성지원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중소기업청 2016a:278).

<표 2-17>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업체 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책자금 규모	29,565	31,493	37,152	32,700	39,019
여성기업 지원실적 (업체 수)	2,759 (819)	3,326 (1,283)	4,186 (1,850)	3,852 (1,764)	4,160 (2,153)
여성기업 지원비율	9.3	12.5	12.8	11.8	10.7

자료: 중소기업청(2016a),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p.278.

<표 2-18> 여성기업 보증 지원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신용보증	416,273	45,587(11.0)	424,448	45,785(10.8)	425,141	44,503(10.5)
기술신용보증	193,539	13,322(6.9)	196,032	13,666(7.0)	208,635	15,832(7.6)
지역신용보증	142,722	53,482(37.5)	144,549	54,036(37.4)	162,461	61,843(38.1)
합계	2,53	114,405(15.2)	705,537	89,060(12.6)	796,237	122,178(15.3)

자료: 중소기업청(2016a),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p.278.

이외에도 다음의 표와 같이 각종 사업에서 여성기업의 경우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지원이 있다.

<표 2-19> 여성기업 우대지원 내용

구분	사 업 명		우대 내용
자금	기보, 신보 보증지원		창업 초기(5년 이내)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0.1% 감면
기술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1점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1점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1점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가점 1점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가점 1점
판로	공공구매(조달청)		○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5천만원 (일반기업 2천만원) ○ 공공기관 의무구매 -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물품과

구분	사 업 명	우대 내용
		용역은 각 5%, 공사 3%
		○ 여성기업간 지역제한 경쟁입찰 - 2억원 이하 일반공사 - 1억원 이하 전문공사 ○ 가점 부여 - 물품구매: 0.25~1점 - 시설공사: 10% 점수 가산
진단 지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가점 2점
수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가점 2점
	무역촉진단 파견	경영·기술혁신성 가점 20점 항목 중 여성기업 포함
	수출역량강화사업	가점 2점
	수출유망지정사업	가점 3점
	절충교역사업	가점 2점
창업	창업지원사업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BI) 입주 우대(가산점 최대 5점)

자료: 중소기업청(2016b), 2016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p.31.

바. 벤처기업확인제도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2006년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유형에 포함시키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시행 이래 벤처기업 수가 급증하면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의해 창업 혹은 성장 초기의 기술 우위 중소기업들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와 정책적 의도에 의해 벤처기업을 과다하게 확인함으로써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 등이 대립되는 것이다(조덕희 외 2015:82).

송치승(2011:73-74)은 벤처기업 재등록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초기 벤처기업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이 해당기간이 지나면 사라짐으로써 재등록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3년여의 기간이 걸려야 벤처확인을 받게 되는 기업이 상당수 있고, 보통 정책자금 보증 및 대

출의 만기가 5~8년인 점을 고려할 때 '창업 후 3년 이내'라는 세제혜택의 기간에서 1~2년 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벤처확인재인증 제도가 형식적이고 비용발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등록 시 최초 벤처확인인증 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벤처기업은 최초 인증 때는 물론, 재등록을 위한 벤처확인인증심사에서도 확인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우선 벤처확인인증을 받으면 이들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기관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지므로 재인증 시에는 필요 서류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송치승·박재필(2013:218)은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초기 벤처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 어느 성장단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고려한 지원정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최종화(2014)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제도적 관점으로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자격인증 취득기업으로 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 정착을 위한 안정적 판로 확보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김기완(2011:18)은 벤처기업확인제도 시행 초기 20% 수준이었던 벤처투자기업 유형이 2000년대 후반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연구개발기업의 수도 정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이후 벤처기업 수가 급증한 것은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벤처인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확인 절차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기술평가보증·대출을 통한 확인 방식을 대폭 축소하여 벤처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조덕희 2016:33).

또한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기술성 평가에서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시장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김기완 2011:44-45).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기업 성장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연구개발기업이나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시장의 판단보다는 연구개발투자의 수준이나 정책자금, 신용보증의 제공 여부 등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김기완 2011:47)

벤처기업확인제도와 관련 신청가능 업종에 대한 논의도 제기된다. 융복합형 벤처창업 활성화에 따라 벤처 업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특히 업종 간 영역

의 불명확화, 신수종 업종의 탄생의 시점에서 제한 업종의 규정은 부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덕희 외 2015:210).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일부 평가지표가 신생 벤처기업보다는 업력이 많은 기업일수록 당연히 확보되어 있는 항목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경영능력, 기술개발환경, 기술개발 실적, 기술 제품화 능력 등은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전·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에 벤처기업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혁신성이 낮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이현숙 외 2012:223).

한편, 국내 벤처투자의 중간·성장단계에 대한 지원 비중이 미국, 유럽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조호정·이부영(2016:7)에 따르면, 우리의 벤처투자는 업력 3년 미만 초기 비중이 30.8%, 3~7년의 중기 24.8%, 7년 이상 후기 비중이 44.4%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 등은 벤처투자를 중간·성장단계에서 유치하는 투자자금으로 인식하여 중기 투자 비중이 50% 이상에 달한다. 국내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자금 지원, 기술이전, 벤처 생존율과 성장성 제고를 위한 창업 보육기관 경쟁력 강화, 실패 이후 재도전자에 대한 멘토링 및 교육,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조호정·이부영 2016:12-13).

창업교육이 일반적인 교양 선택 수준에 머무르며 관련 콘텐츠 부족 및 직접 창업을 유도하는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나성현 외 2014:159)는 점 역시 벤처 창업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창업대학원 및 창업 선도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 중심으로는 창업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등·중등교육기관에서는 창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주미 외 2012:3; 나성현 외 2014:143 재인용).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교양 선택 수준에서 제공(정차근 2013:45; 나성현 외 2014:143 재인용)하고 있으며, 창업학은 기술, 디자인, 인문, 경영 등 다양한 학문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미흡으로 창업교육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에 따라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은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나성현 외 2014:143-145).

제3장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

1. 여성기업 현황과 추이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여성기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전체 사업체 중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의 비중은 35.0%였고 이후 그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이후로는 약 37~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기업 수는 2001년 1,066,019개, 2014년 1,435,866개로 369,847개가 증가하여 13년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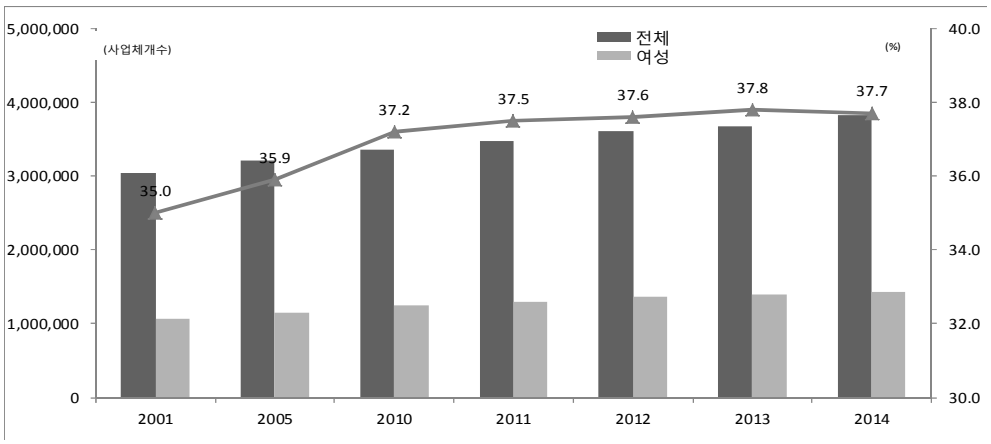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그림 3-1] 여성사업체 수 및 비중 추이

2014년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사업체의 경우 1인 사업체가 41.5%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4인 역시 46.2%이고,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87.7%로 남성(77.5%)에 비해 10%p나 더 높다. 사업체 10인 미만 비중이 90%가 넘을 정도로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여성대표인 경우 그 비중이 더 커 여성사업체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사업체 종사자수별 남녀사업체의 분포

(단위: %)

종사자수	남성	여성
1인	37.8	41.5
2~4인	39.7	46.2
5~9인	12.3	8.5
10~29인	7.1	3.1
30~49인	1.4	0.4
50~99인	1.0	0.3
100~299인	0.5	0.1
300인 이상	0.1	0.0
전체	100.0	100.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통계청(2014).

업종별로 여성사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이 62.9%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 5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5.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8%, 도매 및 소매업 4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운수업이 각각 4.7%, 5.6%, 6.3%로 매우 낮았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하고는 여성사업체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4.5%p, 3.8%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표 3-2> 업종별 여성사업체 비중

(단위: %, %p)

산업	2010년	2014년	증감*
전체	37.2	37.7	0.5
농업, 임업 및 어업	7.9	12.4	4.5
광업	8.9	10.7	1.8
제조업	18.4	20.1	1.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9	4.7	2.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2.6	15.5	2.9
건설업	12.9	16.7	3.8

산업	2010년	2014년	증감*
도매 및 소매업	40.1	40.9	0.8
운수업	4.0	6.3	2.3
숙박 및 음식점업	65.1	62.9	-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1	16.3	2.2
금융 및 보험업	11.4	14.3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3	33.4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1	13.8	2.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2.9	25.8	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0	5.6	1.6
교육 서비스업	53.6	54.0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8	45.8	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3	42.8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3	43.1	1.8

* 증감=2015년 비중-2010년 비중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각 연도)

2.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최근 5-10년 간의 변화

이 절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최근의 양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수(규모), 업종별 분포 및 비중, 업력, 벤처기업확인유형, 지역별 분포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 최근 5-10년 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벤처기업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등록된 벤처기업 공시DB 원자료이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와 벤처인의 공시자료를 비교하여 전체 사업체 중에서 벤처기업의 비중과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 기준 시점과 본 절에서 사용한 벤처기업 공시자료의 산출시점은 매년 12월이다.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2,218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31,260개로 8년간 그 수가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이 대표인 여성 벤처기업은 2006년 508개로 4.1%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4배 이상 증가

하여 2,566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전체 사업체 중 여성사업체 비중이 37.7%인 것에 비해 벤처기업 중 여성 벤처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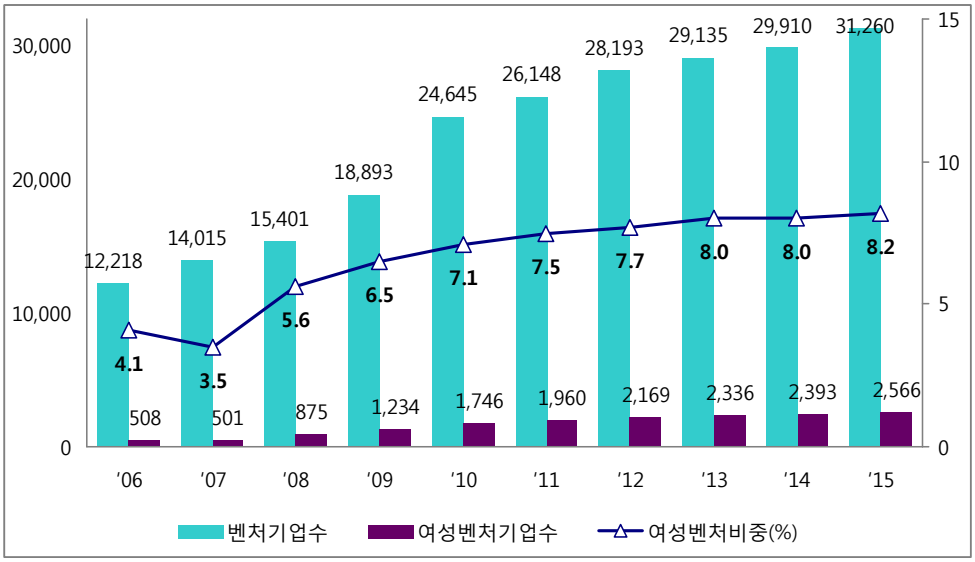

자료: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각 연도)

[그림 3-2] 여성 벤처기업 수 및 비중 추이

전체 여성사업체수와 여성 벤처기업수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5년에는 전체 사업체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0.30% 수준이었다가 2010년에는 0.73%로 2배 이상 비중이 높아졌고, 2014년에는 0.78%로 조금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벤처기업의 비중은 전체 여성사업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남성사업체 중 벤처기업의 비중은 여성사업체 중 벤처기업 비중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2014년 기준 남성사업체 중 벤처기업은 1.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사업체 중 벤처기업은 0.17%였다.

전체 사업체 중 여성대표 사업체의 비중은 2014년 기준 37.7%인데, 약 10년 동안 1.8%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앞서 그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 중 여성 벤처기업의 비중은 2006년 4.1%에서 2015년 8.2%로 두 배 증가하였다.

<표 3-3> 전국사업체 및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 비중 비교

(단위 : 개소, %)

대표자 성별	2005년			2010년			2014년		
	전국 사업체	벤처기업	벤처기업 비중	전국 사업체	벤처기업	벤처기업 비중	전국 사업체	벤처기업	벤처기업 비중
전체	3,204,809	9,732	0.30	3,355,470	24,645	0.73	3,812,820	29,910	0.78
남성	2,053,869	9,423	0.46	2,107,613	22,899	1.09	2,376,954	27,517	1.16
여성	1,150,940	309	0.03	1,247,857	1,746	0.14	1,435,866	2,393	0.17
여성 비율	35.9	3.3	-	37.2	7.1	-	37.7	8.2	-

주) 현재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는 2014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음.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각 연도).

업종별 벤처기업 수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벤처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다.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벤처기업 수는 제조업이 2015년 기준 약 2만2천개로 가장 많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5,574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17개 순으로 많았다. 여성 벤처기업 중에서도 역시 제조업이 1,788개로 가장 많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71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9개 순이었다.

<표 3-4> 업종별 남녀 벤처기업 수

(단위 : 개소)

업종	2010년			2015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4	35	39	3	46	49
광업	1	22	23	0	8	8
제조업	1,338	17,147	18,485	1,788	20,211	21,9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4	15	0	11	1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	155	168	14	148	162
건설업	22	373	395	41	404	445
도매 및 소매업	35	361	396	62	469	531

업종	2010년			2015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운수업	3	12	15	1	20	21
숙박 및 음식점업	0	0	0	0	1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3	3,392	3,565	371	5,203	5,574
금융 및 보험업	0	1	1	0	8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3	3	0	3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9	1,245	1,384	249	1,968	2,21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	51	57	16	94	1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	0	0	0	0
교육서비스업	8	48	56	14	44	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5	6	0	4	4
여가,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21	23	7	37	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14	14	0	15	15
가구내 고용활동	0	0	0	0	0	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	0	0	0	0	0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0	0	0

자료: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각 연도).

위 표를 통해 업종별로 남녀 벤처기업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벤처기업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에서 남성 벤처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2010년과 2015년 남성대표가 각각 92.8%, 91.9%였다. 업종 중 여성 벤처기업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2015년 기준 24.1%였으며, 여가,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5%, 도소매업 1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2% 순이었다.

2015년 기준, 벤처기업이 있는 업종 중 여성 벤처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업종은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었다.

<표 3-5> 업종별 남녀 벤처기업 비중

(단위 : %)

업종	2010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농업, 임업 및 어업	10.3	89.7	6.1	93.9
광업	4.3	95.7	0.0	100.0
제조업	7.2	92.8	8.1	9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7	93.3	0.0	10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7	92.3	8.6	91.4
건설업	5.6	94.4	9.2	90.8
도매 및 소매업	8.8	91.2	11.7	88.3
운수업	20.0	80.0	4.8	95.2
숙박 및 음식점업	-	-	0.0	1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9	95.1	6.7	93.3
금융 및 보험업	0.0	100.0	0.0	1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100.0	0.0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	90.0	11.2	88.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5	89.5	14.5	85.5
교육서비스업	14.3	85.7	24.1	7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7	83.3	0.0	100.0
여가,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7	91.3	15.9	84.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	100.0	0.0	100.0

주)사업체가 한 곳도 없는 업종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각 연도).

벤처기업의 업종은 2015년 기준, 전체 업종 중 제조업이 7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7.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1% 순이었고 나머지 업종은 2% 미만이거나 하나도 없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조업의 비중은 75.0%에서 약간 줄어들었고 대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2010년 14.5%에서 3.3%p 증가하였다. 대표자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2015년 기준, 여성 벤처기업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중이 9.7%로 남성 벤처기업 6.9%에 비해 더 높았으며, 벤처기업 수로는 5년 새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여성 벤처기업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3-6>).

<표 3-6> 남녀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

(단위 : %)

업종	2010년			2015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0.2	0.2	0.2	0.2	0.1	0.2
광업	0.1	0.1	0.1	0.0	0.0	0.0
제조업	74.9	76.6	75.0	70.4	69.7	70.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0.1	0.1	0.1	0.0	0.0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0.7	0.7	0.7	0.5	0.5	0.5
건설업	1.6	1.3	1.6	1.4	1.6	1.4
도매 및 소매업	1.6	2.0	1.6	1.6	2.4	1.7
운수업	0.1	0.2	0.1	0.1	0.0	0.1
숙박 및 음식점업	0.0	0.0	0.0	0.0	0.0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8	9.9	14.5	18.1	14.5	17.8
금융 및 보험업	0.0	0.0	0.0	0.0	0.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4	8.0	5.6	6.9	9.7	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2	0.3	0.2	0.3	0.6	0.4
교육 서비스업	0.2	0.5	0.2	0.2	0.5	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	0.1	0.0	0.0	0.0	0.0
여가,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	0.1	0.1	0.1	0.3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1	0.0	0.1	0.1	0.0	0.0
전체(사업체 수)	1,746	22,899	24,645	2,566	28,694	31,260

주)사업체가 한 곳도 없는 업종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각 연도).

벤처기업 여부는 주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성사업체는 기술력이 필요한 업종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역시 적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21,999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574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217개)인데, 전국사업체조사(2014)

에서 이 세 개 업종의 여성사업체 비율은 20.1%, 16.3%, 13.8%로 전체 여성사업체 비율(37.7%)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의 62.9%가 여성사업체이나 이 업종은 대부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벤처기업이 없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네 가지 업종도 여성사업체 비율(40% 이상)은 높으나 벤처기업 수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는 업종이다.

여성사업체 1,000개당 벤처기업 수를 계산해 보면 전 업종에 걸쳐 1.8개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5.9개, 제조업 22.4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8.8개,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1.6개 등이다. 즉 여성사업체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으로 벤처기업 진입이 활발하다. 같은 방식으로 남성사업체 1,000개 당 벤처기업 수를 계산하면 전 업종에 걸쳐 12.1개이며, 벤처기업 진입이 가장 활발한 업종은 여성사업체와 동일한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2.9개, 제조업 63.7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3.7개이다.

<표 3-7> 전국사업체 및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 개소, %)

업종	전국사업체(2014)			벤처기업(2015)		
	전체	여성 사업체	여성사업체 비율	전체	여성 사업체	여성사업체 비율
농업, 임업, 어업	3,184	394	12.4	49	3	6.1
광업	2,013	216	10.7	8	0	0.0
제조업	397,171	79,684	20.1	21,999	1,788	8.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840	86	4.7	11	0	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7,761	1,205	15.5	162	14	8.6
건설업	128,215	21,387	16.7	445	41	9.2
도매 및 소매업	997,120	408,194	40.9	531	62	11.7
운수업	378,884	23,742	6.3	21	1	4.8
숙박 및 음식점업	703,364	442,342	62.9	0	0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0,664	6,639	16.3	5,574	371	6.7
금융 및 보험업	41,909	6,011	14.3	8	0	0.0

업종	전국사업체(2014)			벤처기업(2015)		
	전체	여성 사업체	여성사업체 비율	전체	여성 사업체	여성사업체 비율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1,186	47,131	33.4	3	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6,376	13,262	13.8	2,217	249	1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785	13,098	25.8	110	16	1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096	683	5.6	0	0	0.0
교육 서비스업	175,389	94,783	54.0	58	14	2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505	60,231	45.8	4	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635	44,396	42.8	44	7	1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9,723	172,382	43.1	15	0	0.0
전체	3,812,820	1,435,866	37.7	31,259	2,566	8.2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2014),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2015).

다음으로 남녀 벤처기업의 업력을 비교해 보면, 5년이 초과된 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1년 이내 업력 기업의 비중이 3.8%에서 12.8%로 증가하여 최근 들어 신생 벤처기업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남성 벤처기업 중 51.8%, 여성 벤처기업 중에서는 45.6%가 5년 초과 기업이었으며, 3~5년 업력 비중이 남성 15.3%, 여성 18.8%로 여성 벤처기업의 업력이 남성 벤처기업보다 조금 짧다고 볼 수 있다.

<표 3-8> 남녀 벤처기업의 업력 분포

(단위 : %)

업력	2010년			2015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개월 이내	0.8	1.0	0.8	7.3	7.7	7.4
6개월~1년	3.0	4.1	3.0	5.3	6.0	5.4
1년~3년	19.2	24.9	19.6	20.3	21.8	20.4
3년~5년	17.9	18.6	17.9	15.3	18.8	15.6
5년 초과	59.2	51.5	58.6	51.8	45.6	51.3
전체(사업체 수)	22,790	1,741	24,531	28,626	2,563	31,189

주) 예비벤처는 제외(2010년 114개, 2015년 71개).

자료: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각 연도).

벤처기업확인유형에 따른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술평가보증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녀대표자 간 차이도 거의 없다.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기술평가보증유형이 가장 비중이 높긴 하지만 조금 줄어들었고 기술평가대출유형이 2010년 4.1%에서 2015년 7.9%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 벤처기업은 2010년 기술평가보증유형의 비중이 87.3%였는데 2015년에는 81.1%로 6.2%p 감소한 반면 기술평가대출유형이 7.4%에서 12.2%로 4.8%p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성 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유형의 비중이 2015년 7.5%인데 비해 높은 비중이다. 한편 연구개발유형의 비중은 남성 벤처기업은 2010년 6.6%에서 2015년 5.5%로 조금 줄어든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4.4%에서 4.8%로 조금 증가하였다.

<표 3-9> 남녀 벤처기업의 벤처유형

(단위 : %)

벤처유형	2010년			2015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벤처투자유형	2.7	0.5	2.5	3.2	1.8	3.1
연구개발유형	6.6	4.4	6.4	5.5	4.8	5.5
기술평가보증유형	86.4	87.3	86.5	83.5	81.1	83.3
기술평가대출유형	3.8	7.4	4.1	7.5	12.2	7.9
예비벤처유형	0.5	0.3	0.5	0.2	0.1	0.2
전체(사업체수)	22,899	1,746	24,645	28,694	2,566	31,260

자료: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각 연도).

마지막으로 시도별 벤처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의 벤처기업이 분포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52.7%, 2015년에는 53.8%로 조금 더 늘어났다.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015년 기준 경기 26.1%, 서울 21.6%이고 남성 벤처기업은 경기 30.9%, 서울 22.4%로 분포의 큰 차이는 없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여성 벤처기업은 부산 7.2%, 대구 5.8% 순이었으며 남성 벤처기업은 부산 6.8%, 경북 5.3% 순이었다.

<표 3-10> 지역별 벤처기업 수

(단위 : %)

지역	2010년			2015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서울	22.7	20.1	22.9	22.4	21.6	22.5
부산	6.4	6.4	6.4	6.8	7.2	6.8
대구	5.0	6.2	4.9	5.0	5.8	4.9
인천	5.4	5.4	5.3	4.6	4.3	4.7
대전	3.4	3.2	3.4	3.8	3.5	3.8
광주	2.4	3.2	2.3	2.3	3.2	2.3
경기	29.4	24.7	29.8	30.9	26.1	31.3
강원	1.7	2.3	1.7	1.8	2.8	1.7
충북	2.7	2.3	2.7	2.4	2.7	2.4
충남	2.3	3.4	2.2	2.2	3.4	2.1
전북	1.9	2.8	1.9	1.9	3.1	1.8
전남	4.7	6.2	4.6	5.0	5.2	5.0
경북	6.7	7.8	6.7	5.3	5.3	5.3
경남	0.2	0.5	0.2	0.4	0.8	0.4
제주	1.6	1.7	1.6	1.3	1.3	1.3
울산	3.6	3.7	3.6	3.5	3.5	3.5
세종	-	-	-	0.2	0.3	0.2
전체(사업체수)	22,790	1,741	24,531	28,626	2,563	31,189

자료: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각 연도).

3. 여성 벤처기업의 특징

앞 절에서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은 벤처인의 벤처기업공시 DB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절에서 살펴보게 될 여성 벤처기업의 특징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영성과 및 일반 현황,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1999년 전수조사로 실시되었다가 2008년부터 표본조사로 전환되어, 벤처확인기업 전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실태조사는 2014년 12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29,844개(예비 벤처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업종과 규모로 비례할당하여 총 2,227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조사는 2015년 7~9월에 실시되었고

2014년 기준으로 경영성과 및 재무 현황, 인력 및 조직 현황, 기업 일반 현황, 대표자 및 창업주 특성,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마케팅 및 해외진출 현황, 제휴 및 협력 현황, 벤처캐피탈 및 M&A 현황, 공정거래 질서 현황, 지원제도 및 교육, 경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이 절에서는 여성 벤처기업과 남성 벤처기업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자 성별로 다양한 변인들을 교차하여 분석하였고 모집단 구성비에 맞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벤처기업실태조사 원자료는 표본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앞 절에서 분석한 벤처인의 벤처기업 공시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또한 표집을 위한 비례할당 시 대표자 성별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벤처기업 중 여성기업 비중이 2014년 기준 8.0%이지만, 본 원자료에서는 여성 벤처기업 비중은 6.4%로 실제 여성비중보다 과소표집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여성 벤처기업 수는 1,924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35개임).

가. 대표자의 인구학적 특성

먼저 대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40대와 50대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성은 30대 비중이 11.0%로 남성 7.8%에 비해 높고 60대 이상은 여성 8.5%, 남성 11.4%로 여성대표의 연령대가 남성보다는 약간 낮다고 할 수 있다. 평균연령은 여성 49.1세, 남성 50.1세로 큰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4년제 대졸의 비중이 남성 51.7%, 여성 44.0%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고졸이 30.7%로 남성 11.1%에 비해 높고 석사학위 이상은 남성 30.5%인 데 비해 여성은 19.2%에 불과해 대표자의 교육수준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처기업 대표의 경우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중요할 수 있는데 여성 벤처기업은 이 부분에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공분야에서의 남녀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공학(엔지니어) 전공자 비중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데 비해 여성은 다양한 전공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년제 대졸과 4년제 대졸의 경우 공학전공 비중은 18.0%에 불과한 데 비해 인문사회 전공이 21.7%로 더 높았으

며, 기타 전공도 남성은 5.6%인 데 비해 여성은 26.0%나 되었다. 석사학위 이상에서도 공학 전공자 비중이 2년제 대졸과 4년제 대졸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전공의 이러한 성별 차이는 대학의 공학계열 여성전공자 비중이 매우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대표이사와 창업자의 동일 여부에 있어서 남성은 91.4%가 동일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26.7%가 동일하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3-11> 벤처기업 대표자의 배경변인별 특성

(단위: 개소, %)

변인			전체	남성	여성
연령		20대	0.4	0.4	0.8
		30대	8.0	7.8	11.0
		40대	39.8	40.0	36.9
		50대	40.5	40.4	42.8
		60대 이상	11.2	11.4	8.5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29,844	27,921	1,923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0.3	0.3	0.7
		고등학교 졸업	12.3	11.1	30.7
		2년제 대졸	6.4	6.4	5.4
		4년제 대졸	51.2	51.7	44.0
		석사학위 소지자	18.6	19.0	12.4
		박사학위 소지자	11.2	11.5	6.8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29,845	27,921	1,924
전공	2년제대졸·4년제대졸	공학(엔지니어)	63.3	65.7	18.0
		자연과학	9.2	8.6	19.8
		경영경제학	15.6	15.7	14.5
		인문사회	6.3	5.5	21.7
		기타	5.6	4.5	26.0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26,065	24,746	1,319
	석사학위소지자·	공학(엔지니어)	65.9	67.5	29.5

변인			전체	남성	여성
	박사학위소지자	자연과학	11.0	10.4	23.2
		경영경제학	15.3	15.1	19.5
		인문사회	3.4	3.2	8.1
		기타	4.5	3.8	19.7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8,964	8,594	370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나. 기업 일반 현황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업종은 첨단제조, 일반제조, 소프트웨어/정보통신으로, 일반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벤처기업의 업종분포를 살펴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 28.5%, 기계/제조/자동차 28.0%로 일반제조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첨단제조와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업종은 각각 17.7%, 11.3%였다. 남성 벤처기업 역시 일반제조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첨단제조의 비중이 22.4%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남녀 벤처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의 여성 벤처기업 비중이 8.4%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이 2.7%로 가장 낮았다.

<표 3-12> 업종별 벤처기업 분포

(단위: 개소, %)

업 종		전체	남성	여성	여성(%)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6.5	6.7	3.0	3.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1.7	11.8	10.5	5.8
	통신기기/방송기기	3.9	3.9	4.2	7.0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21.7	21.3	28.5	8.4
	기계/제조/자동차	27.1	27.0	28.0	6.7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11.0	11.5	4.6	2.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3	6.2	6.7	6.9
기타	기타	11.7	11.5	14.5	8.0

업 종		전체	남성	여성	여성(%)
계	-	100.0	100.0	100.0	6.5
표본수(가중치부여)		29,848	27,922	1,926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기업의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 있는 기술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6개의 첨단기술 즉 6T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벤처기업과 여성 벤처기업의 분포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벤처기업은 IT의 비중이 30.7%인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20.9%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주력제품이 6T에 포함되는 기업은 남성 벤처기업 57.6%인 데 비해 여성 벤처기업은 49.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앞서 업종별 분포에서도 나타났듯이 첨단 산업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13>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성이 가장 큰 기술 분포

(단위: 개소, %)

6T구분	전체	남성	여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30.0	30.7	20.9
BT(Biology Technology: 바이오기술)	8.2	8.1	9.1
NT(Nano Technology: 나노기술)	3.2	3.3	1.6
ET(Enviroment Technology: 환경기술)	13.0	12.9	14.5
CT(Culture Technology: 문화컨텐츠기술)	2.1	2.0	3.8
ST(Space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0.5	0.6	0.0
이외기술	42.9	42.4	50.2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29,844	27,921	1,923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남녀 벤처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 중 10인 미만이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남성 벤처기업 45.1%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반면 남성 벤처기업은 5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9.7%인 데 비해, 여성 벤처기업은 2.7%에 불과하였다. 즉 벤처기업 역시 일반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대표인 경우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더 컸다.

<표 3-14> 규모별 벤처기업 분포

(단위: 개소, %)

고용규모	전체	남성	여성
1인~9인	45.7	45.1	53.5
10~29인	35.4	35.4	35.6
30~49인	9.7	9.8	8.3
50~99인	6.2	6.5	1.7
100인 이상	3.1	3.2	1.0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29,845	27,921	1,924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성장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고도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44.4%, 여성 벤처기업 43.1%로 가장 많았고, 쇠퇴기에 있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앞서 업력에서도 나타났듯이 창업기에 있는 기업의 비중은 남성 벤처기업 5.7%, 여성 벤처기업 3.1%로, 최근에 창업한 여성 벤처기업이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성장기와 성숙기에 있는 기업의 비중이 남성 93.9%, 여성 96.8%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3-15>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분포

(단위: 개소, %)

성장단계	전체	남성	여성
창업기	5.5	5.7	3.1
초기성장기	27.1	26.9	30.1
고도성장기	44.3	44.4	43.1
성숙기	22.6	22.6	23.6
쇠퇴기	0.4	0.4	0.0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29,844	27,920	1,924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상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현재 상장된 벤처기업은 1.5%에 불과하며 특히 여성 벤처기업 중에서는 한 기업도 없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1년 이내에 추진할 계획인 기업은 거의 없었으며, 2년 이내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남성 벤처기업 중 5.0%, 여성 벤처기업 중 5.5%로 거의 비슷했다.

<표 3-16>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현재 상장 기업	1.5	1.6	0.0
현재 추진 중	0.7	0.7	0.8
1년 이내 추진할 계획	0.3	0.3	0.8
2년 이내 추진할 계획	5.0	5.0	5.5
추진계획 없음	92.5	92.5	93.0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29,845	27,920	1,925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 인증 외에도 이노비즈 인증, 경영혁신 인증이 있는데, 이노비즈[33] 인증은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이 있거나 미래 성장가능성

33) 이노비즈(INNO-BIZ) 기업이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함.

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이다. 경영혁신 인증은 역시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벤처기업 인증만 받은 기업은 전체 벤처기업 중 62.7%이며, 남성 벤처기업 62.3%, 여성 벤처기업 69.4%로 여성 벤처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인증을 함께 받은 기업은 남성 31.2%, 여성 26.0%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 인증까지 모두 받은 기업은 남성 5.4%, 여성 3.8%로 역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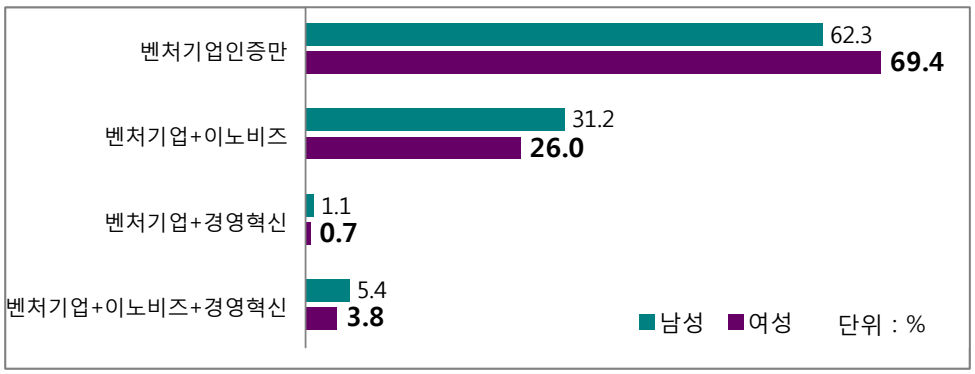

주) 표본수(가중치 부여): 29,845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3-3] 인증제도 유형별 현황

다. 재무관련 특성

2014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214.6조원으로 추정되고,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약 7,19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7,292백만원, 여성 벤처기업은 5,710백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약 1.3배 더 많았다. 2013년 말 기준 남성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6,560백만원, 여성 벤처기업은 5,1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남성 벤처기업 11.2%, 여성 벤처기업 11.8%로 여성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았다.

대체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보다 더 좋았는데, 평균 영업이익은 여성 벤처기업보다 1.5배 더 많았고, 순이익도 1.3배 더 많

았다.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남성 벤처기업 5.8%, 여성 벤처기업 5.0%였으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액 순이익률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4.1%로 동일하였다.

<표 3-17>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대표자 성별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남성	27,921	7,292.08	425.21	106.19	301.18	5.8	4.1
여성	1,924	5,710.07	286.02	76.82	233.59	5.0	4.1
전체	29,845	7,190.10	416.23	104.29	296.82	5.8	4.1

주1)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주2) 매출액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100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당 평균 자산은 6,223백만원, 평균 부채는 3,569백만원, 평균 자본은 2,654백만원이었다. 벤처기업의 재무 현황 역시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보다 자산, 부채, 자본 모두 더 많았다. 특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금은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보다 약 1.6배 더 많았다. 전년 대비 자산증가율은 남성 벤처기업이 18.8%로 여성 벤처기업 18.2%보다 약간 더 높았고,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자기자본비율은 남성 벤처기업 42.9%, 여성 벤처기업 37.9%로 역시 남성 벤처기업이 5.0%p 더 높았다. 남성 벤처기업의 자본금이 더 많다 보니,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여성 벤처기업이 163.7%로 남성 벤처기업 133.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8> 벤처기업의 재무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대표자 성별	기업수	자산	부채	자본	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남성	27,921	6,351.3	3,628.6	2,722.7	18.8	42.9	133.3
여성	1,924	4,368.3	2,711.9	1,656.4	18.2	37.9	163.7
전체	29,845	6,223.4	3,569.5	2,653.9	18.8	42.6	134.5

주 1) 자기자본비율=(자본/총자산)*100

주 2) 부채비율=(부채/자본)*100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2014년에 정부의 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35.5%였으며, 평균 정책지원자금 규모는 29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벤처기업 중에서는 35.6%, 여성 벤처기업 중에서는 33.9%가 정책지원을 받았으며, 남성 벤처기업의 평균 정책지원자금은 297백만원, 여성 벤처기업은 224백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이 정책지원 경험이 조금 더 많았고 지원금액도 더 많았다.

정책지원자금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면, 정책지원 경험이 있는 남성 벤처기업 중 절반 이상(51.1%)이 R&D 자금(출연금)을 지원받은 반면, 여성 벤처기업은 53.4%가 보증서 지원(보증서 발급 대출)을 받아 가장 많았고, R&D 자금 지원경험은 43.0%였다. R&D 자금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남성 벤처기업은 평균 234백만원인 데 비해, 여성 벤처기업은 162백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의 지원 금액이 약 1.4배 더 많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약 1/3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은 보증서 지원경험 및 금액이 남성 벤처기업보다 더 많은 반면 R&D 자금 지원은 지원경험과 금액 모두 남성 벤처기업보다 적었다.

<표 3-19>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현황

(단위: 개소, % , 백만원)

정부지원 구분	남성			여성		
	기업수	%	평균금액	기업수	%	평균금액
R&D 자금(출연금) 지원경험	5,077	51.1	233.7	281	43.0	161.8
융자(정책자금) 지원경험	2,492	25.1	220.0	138	21.1	139.5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지원경험	4,046	40.7	301.8	349	53.4	233.3

주) 표본수: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10,459개).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2014년 기준 벤처기업의 투자처별 총 투자액은 평균 397백만원이었는데, 남성 벤처기업 406백만원, 여성 벤처기업 263백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이 1.5배 이상 더 많았다. 남녀 벤처기업 모두 국내 R&D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국내 R&D 투자금액은 162백만원으로 남성 벤처기업 228백만원에 비해 적지만 전체 투자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 벤처기업 61.7%로 남성 벤처기업 56.1%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액 연구개발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 벤처기업 3.0%로 여성 벤처기업 2.4%보다 더 높았다.

<표 3-20> 투자처별 총 투자액

(단위: 개소, 백만원, %)

대표자 성별	기업수	국내설비 투자액	국내 R&D 투자액	해외 투자액	기타	전체 투자액	매출액연구 개발비율*
남성	19,543	100.6	227.7	4.4	72.9	405.6	3.0
	비율	24.8	56.1	1.1	18.0	100.0	
여성	1,265	72.7	162.1	1.1	26.9	262.8	2.4
	비율	27.7	61.7	0.4	10.2	100.0	
전체	20,808	98.9	223.7	4.2	70.1	397.0	2.9

주 1) 매출액 연구개발 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100

주 2) 표본수: 2014년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라. 기술 현황

벤처기업이 2014년 기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남성 벤처기업 7.3건, 여성 벤처기업 6.7건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특허권의 비중이 가장 컸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중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보다 더 건수가 많은 것은 실용신안권으로 나타났다. 현재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은 평균 1.4건으로, 역시 특허권 비중이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남녀 벤처기업 모두 현재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은 매우 적었다.

<표 3-21>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평균건수)

(단위: 건)

산업재산권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현재보유	국내산업재산권	특허권	4.2	4.3	3.5
		실용신안권	0.7	0.6	0.9
		디자인권	1.0	1.0	1.0
		상표권	1.1	1.1	1.1
	해외산업재산권		0.4	0.4	0.3
	합계		7.4	7.3	6.7
현재출원 중	국내산업재산권	특허권	1.0	1.0	0.8
		실용신안권	0.0	0.0	0.1
		디자인권	0.1	0.1	0.2
		상표권	0.1	0.1	0.1
	해외산업재산권		0.2	0.2	0.1
	합계		1.4	1.4	1.3

주) 표본수(가중치 부여): 29,845개소.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관련 기술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56.7%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13.9%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설연구와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4.7%였고,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모두 없는 기업 역시 14.7%로 나타났다.

남성 벤처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57.5%인 데 비해 여성 벤처기업 중에서는 45.8%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여성 벤처기업 16.7%로 남성 벤처기업 13.7%보다 조금 높았고, 여성 벤처기업 중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모두 없는 기업이 22.1%로 남성 벤처기업 14.2%보다 높았다. 따라서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의 업종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크고 소프트웨어/정보통신과 같이 연구개발이 핵심인 업종의 비중이 작기 때문일 것이다.

<표 3-22>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개소, %)

	전체	남성	여성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56.7	57.5	45.8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13.9	13.7	16.7
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보유	14.7	14.6	15.3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없음	14.7	14.2	22.1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29,845	27,921	1,924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마. 기업의 경쟁력 및 인프라 수준

기업의 경쟁력을 동종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의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품질 경쟁력의 평균점수가 3.67점(높다는 비율 59.6%)으로 가장 높았고, 마케팅 경쟁력 점수가 3.09점(높다는 비율 27.3%)으로 가장 낮았다.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남녀 벤처기업의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평균점수로 비

교해보면, 디자인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 마케팅 경쟁력의 평균점수가 남성벤처기업의 점수가 조금 더 높았고,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 조직관리 경쟁력은 여성벤처기업의 점수가 조금 더 높았다.

<표 3-23> 경쟁력 비교

(단위: %, 점)

		전체	남성	여성
기술 경쟁력	낮음	6.0	5.9	6.7
	보통	36.8	36.7	37.8
	높음	57.2	57.3	55.5
	평균점수	3.63	3.63	3.64
가격 경쟁력	낮음	9.6	9.5	11.3
	보통	50.0	50.3	45.4
	높음	40.4	40.2	43.3
	평균점수	3.37	3.37	3.41
디자인 경쟁력	낮음	11.5	11.4	12.7
	보통	52.2	52.1	54.6
	높음	36.3	36.5	32.6
	평균점수	3.29	3.30	3.25
품질 경쟁력	낮음	4.4	4.4	3.7
	보통	36.0	35.5	43.8
	높음	59.6	60.1	52.5
	평균점수	3.67	3.67	3.61
조직관리 경쟁력	낮음	13.7	13.7	14.3
	보통	57.6	57.6	58.2
	높음	28.6	28.7	27.4
	평균점수	3.18	3.18	3.20
마케팅 경쟁력	낮음	18.6	18.2	24.6
	보통	54.0	54.2	51.7
	높음	27.3	27.6	23.6
	평균점수	3.09	3.10	2.99

주) 표본수(가중치 부여): 29,845개소.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자사의 벤처 인프라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의 평

균점수가 남성 벤처기업이 여성 벤처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벤처기업 모두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평균 점수가 남성 3.23점, 여성 3.15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 벤처기업의 평균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3.0점 이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벤처주식의 거래시장 발달'이 2.91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른 항목에 비해 남성 벤처기업 3.04점과도 격차가 컸다. 그 외 '기업에 대한 규제 및 퇴출장벽 완화'와 'VC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활성화'에 대한 여성 벤처기업의 평균점수가 각각 2.93점, 2.95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질서 구현'과 '우수인력의 적극적 창업의욕 고취',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사회분위기'는 남녀 간 평균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이 약 3점 수준이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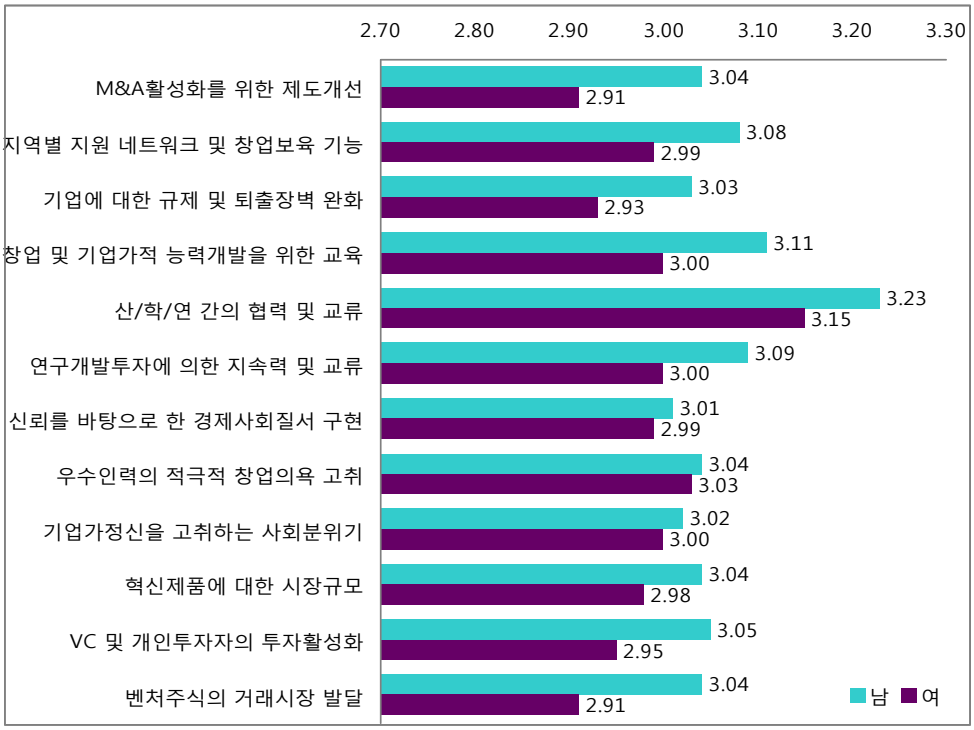

주) 표본수(가중치 부여): 29,845.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3-4] 벤처 인프라 수준

바. 벤처기업확인제도 및 경영상 애로사항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효과에 대해 7개 항목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남녀 벤처기업 모두 '기업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있다는 비중이 남성 벤처기업 66.0%, 여성 벤처기업 72.8%였으며, 평균 점수도 남성 3.77점, 여성 3.83점으로 여성 벤처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에 있어서는 효과 있다는 응답이 남성 벤처기업 32.2%, 여성 벤처기업 25.5%로 가장 저조했고 평균 점수도 남성 3.21점, 여성 3.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창업활성화 촉진 효과'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점수도 남성 3.52점, 여성 3.49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에서는 남성 벤처기업보다 여성 벤처기업에서 더 효과성을 높게 보았고,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남성 벤처기업 3.63점, 여성 벤처기업 3.56점으로 남성 벤처기업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효과성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이미지 제고 등 홍보 효과'와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았고,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와 '세제혜택 효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24>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효과

(단위: %, 점)

		전체	남성	여성
창업활성화 촉진효과	효과가 거의 없음	7.3	7.1	10.8
	그저 그렇다	38.9	39.3	32.9
	효과 있음	53.8	53.6	56.3
	평균	3.52	3.52	3.49
기술개발 촉진효과	효과가 거의 없음	6.7	6.5	9.3
	그저 그렇다	42.1	42.3	39.8
	효과 있음	51.2	51.2	50.9
	평균	3.5	3.51	3.46
기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	효과가 거의 없음	3.6	3.6	3.1
	그저 그렇다	30.0	30.4	24.1
	효과 있음	66.4	66.0	72.8

		전체	남성	여성
	평균	3.78	3.77	3.83
자금조달 및 투자유인 효과	효과가 거의 없음	6.6	6.5	7.6
	그저 그렇다	34.3	34.6	29.4
	효과 있음	59.2	58.9	63.0
	평균	3.62	3.62	3.65
세제혜택 효과	효과가 거의 없음	9.2	9.1	10.8
	그저그렇다	41.8	41.7	43.4
	효과 있음	49.0	49.2	45.8
	평균	3.47	3.47	3.41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	효과가 거의 없음	6.5	6.3	10.2
	그저 그렇다	36.3	36.6	32.6
	효과 있음	57.2	57.1	57.2
	평균	3.62	3.63	3.56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	효과가 거의 없음	11.8	11.6	14.6
	그저 그렇다	56.4	56.2	60.0
	효과 있음	31.8	32.2	25.5
	평균	3.2	3.21	3.07

주) 표본수(가중치 부여): 29,845개소.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평균 점수는 남녀 벤처기업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관리에 대한 애로가 남성 3.94점, 여성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 특허분쟁 애로가 남성 2.7점, 여성 2.6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항목 중 해외시장 개척,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기술유출 디자인 및 상표도용, 업계내의 과당경쟁 및 덤핑, 조직관리, 각종 규제, 불공정한 시장질서에 있어서 여성 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기술 개발, 법률, 회계, 세무 관련지식 부족, 환율변동, 특허분쟁과 관련한 애로는 남성 벤처기업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벤처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은 보통 이상이었으며, 기업경영에 가장 중요한 자금, 인력,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컸고 이는 남녀 벤처기업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 벤처기업은 대부분의 항목

에서 남성 벤처기업보다 비슷하거나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업계 내 경쟁과 불공정한 시장질서에 있어서 남성보다 더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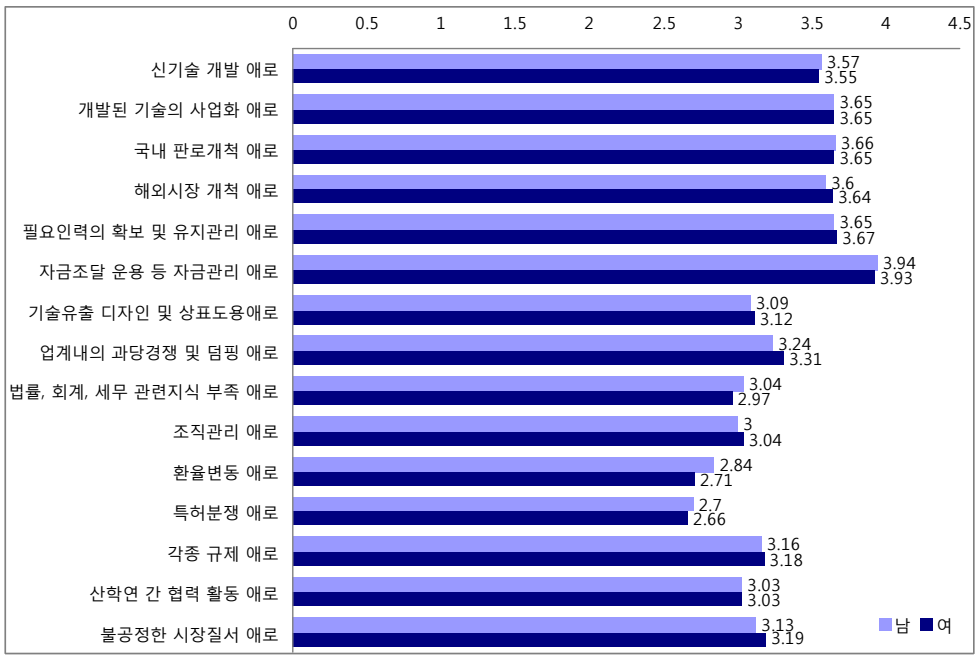

주) 표본수(가중치 부여): 29,845.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3-5] 경영상 애로사항

제4장

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와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1. 여성기업의 R&D 참여도와 애로사항

R&D활동은 벤처기업으로 진입요건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벤처기업인증이 정부의 R&D 지원사업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3장의 <표 3-24>에서 벤처기업의 57.2%가 벤처기업확인이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제5장의 여성기업대표 면접조사에서도 R&D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벤처기업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벤처기업인증을 받아 정부의 R&D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는 여성대표들도 있고, 가산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벤처기업인증이 R&D활동을 위한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대표들도 있다. R&D활동에서 유리한 점을 제외한 다른 혜택(홍보, 세제, 자금, 입지, M&A 등)을 최우선 목적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려는 여성대표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기업들이 R&D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여성 벤처기업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벤처기업으로 진입 가능성이 있는 여성기업도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성기업을 1) 벤처기업, 2)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1기업), 1인 창조기업, 3)앞의 네 가지 유형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반 여성기업으로 분류하여 R&D활동 참여와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전체 여성기업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표 4-1>과 같다.

<표 4-1> 여성기업의 유형별 비중

(단위 : %, 개)

	전체 여성기업	여성 벤처기업	여성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일반 여성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제외)
기업 수	53,805	672	1,316	52,489
비중	100.0	1.2	2.4	97.6

주) 여성기업실태조사는 기업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두지 않으므로 비중이 매우 적은 기업유형(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인 창조기업)의 분석결과에 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둔다.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가중치 부여.

전체 여성기업 중에서 R&D 담당인력(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8.4%에 불과하다(<표 4-2>). 특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여성기업의 경우 7.3%만이 R&D인력(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 벤처기업은 61.5%가, 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은 53.9%가 R&D인력(조직)을 가지고 있다.

<표 4-2> 여성기업 유형별 연구개발인력(조직) 보유 비율

(단위 : %)

연구개발 인력 보유 여부	전체 여성기업	여성 벤처기업	여성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일반 여성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제외)
보유	8.4	61.5	53.9	7.3
미보유	91.6	38.5	46.1	9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가중치 부여.

여성기업들이 자체기술개발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26.6%)”과 “개발인력 확보 곤란(16.0%)”이다. 그 밖에 “기술개발 경험, 관련정보, 기획능력 부족(13.7%)도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여성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42.9%)”과 “개발인력 확보 곤란(28.3%)”이 타 유형의 여성기업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일반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경험(6.7%)과 기획능력 부족(2.9%)”이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3> 여성기업 유형별 자체기술개발 시 애로사항(1순위)

(단위 : %)

애로사항	전체 여성기업	여성 벤처기업	여성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일반 여성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제외)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	26.6	42.9	35.2	26.4
개발인력 확보 곤란	16.0	28.3	21.6	15.8

애로사항	전체 여성기업	여성 벤처기업	여성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일반 여성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제외)
개발인력의 잦은 이직	8.4	10.0	11.9	8.3
긴 개발 소요기간	5.0	8.6	11.7	4.8
기술개발 경험 부족	6.6	0.7	3.3	6.7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4.2	5.2	2.7	4.2
기술개발 기획능력 부족	2.9	-	2.7	2.9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1.0	-	1.6	1.0
물류비용 부담	3.2	1.3	3.1	3.2
기타	26.1	3.0	6.2	26.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가중치 부여.

여성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여성기업의 20.2%가 “조금 느낀다”고 응답했고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4.0%이다. 이에 비해 “전혀 느끼지 않는다(11.9%)”거나 “별로 느끼지 않는다(26.3%)”는 기업이 많다. 일반 여성기업 비해 여성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표 4-4> 여성기업 유형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단위 : %)

애로사항	전체 여성기업	여성 벤처기업	여성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일반 여성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제외)
전혀 느끼지 않는다	11.9	9.8	2.4	·8.4
별로 느끼지 않는다	26.3	23.0	22.4	24.0
그저 그렇다	37.7	30.3	37.6	41.9
조금 느낀다	20.2	37.0	27.7	23.5
많이 느낀다	4.0	-	9.8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가중치 부여.

여성기업들이 정부정책을 활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49.8%)”이다.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롭다(20.2%)”거나 “신속한 지원이 부족하다(11.8%)” 등의 기타 의견은 그보다 훨씬 비중이 낮다. 그러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롭다(27-29%)”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표 4-5> 여성기업 유형별 정부정책활용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

애로사항	전체 여성기업	여성 벤처기업	여성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일반 여성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인 창조기업 제외)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	49.8	33.8	43.5	50.0
신속지원 부족	11.8	12.8	11.6	11.8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 (복잡한 서류요구 등)	20.2	28.7	26.7	20.0
지원 규모 부족	7.6	13.4	7.1	7.6
지원내용의 기업수요와 불일치	5.4	6.8	6.3	5.4
관리기관에 대한 접근 어려움	2.8	-	0.3	2.8
사후관리 복잡	1.9	4.3	2.5	1.9
기타	0.6	0.1	2.1	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가중치 부여.

2.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벤처기업은 다른 여성기업에 비해 R&D 인력(조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R&D 인력(조직)을 가진 여성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즉 유력한 여성 벤처기업 후보군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기술개발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성기업도 장기적으로는 R&D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2015년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에서 1)벤처기업, 2)벤처기업은 아니지만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 3)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벤처기업도 아니고 연구인력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을 추출하여, 세 유형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2015년 여성기업실태조사에서 벤처기업의 비중은 1.2%(670개)인데,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한 여성기업은 4,472개로 전체 여성기업의 8.3%에 해당된다[34]. 세 번째 유형의 여성기업은 10,845개로 전체 여성기업의 20.2%를 차지한다.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끼는 세 번째 비교집단은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한 두 번째 집단에 비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지만 분석에서 제외된 나머지 기업(약 70%)에 비해 R&D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표 4-6> 여성 벤처기업 후보군과 기타 비교대상 여성기업

(단위 : %, 개)

구 분	여성 벤처기업 (A)	벤처기업 후보군 (연구개발인력 보유) (B)	(A)와 (B)는 아니나 R&D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기업 (C)	전체 여성기업
기업 수	670	4,472	10,845	53,804
비 중	1.2	8.3	20.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가중치 부여.

업종분포를 살펴보면 세 집단의 기업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기타 제조업의 비중이 43.1%로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7%, 건설업 11.0%, 도소매업 10.1% 순이었다. 벤처는 아니지만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 역시 기타 제조업 비중이 가장 많지만 27.5%로 벤처기업보다는 적었고 도매 및 소매업이 17.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9% 순이었으며 특히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0.2%로 높은 편이었다(벤처기업은 7.5%).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건설업의 비중이 29.3%로 가장

34) 여성기업실태조사는 벤처기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많았고, 기타 제조업 22.6%, 도소매업 10.5% 순이었다. 앞 절에서 분석한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 자료와 비교해 보면, 벤처기업 중 제조업 비중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이 두 업종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업종특성상 벤처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이라고 판단된다.

<표 4-7> 업종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여성 벤처기업 (A)	벤처기업 후보군 (연구개발인력 보유) (B)	(A)와 (B)는 아니나 R&D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기업 (C)	벤처기업 공시 DB*(전체 모집단)
식료품/음료	7.5	6.6	2.7	70.4
섬유/의복/가방/신발	1.0	2.4	2.5	
기타 제조업	43.1	27.5	22.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	0.2	1.1	0.5
건설업	11.0	10.6	29.3	1.4
도매 및 소매업	10.1	17.9	10.5	1.7
운수업	0.0	0.3	2.0	0.1
숙박 및 음식점업	0.0	1.0	3.0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5	10.2	3.5	17.8
금융 및 보험업	0.0	0.0	1.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	1.1	1.9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7	15.9	9.1	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0	1.3	3.2	0.4
교육 서비스업	1.8	1.7	2.9	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	1.0	1.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	1.1	0.9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	1.1	2.7	0.0
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670	4,472	10,845	31,260

주) * 벤처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벤처기업공시 DB(2015.12.)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권역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특히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 중 80.8%가 수도권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수도권 집중 정도가 매우 컸다. 그 외 여성 벤처기업은 충청권의 비중이 15.6%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지역 간 집중도의 차이는,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벤처인증 지원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4-8> 권역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여성 벤처기업 (A)	벤처기업 후보군 (연구개발인력 보유) (B)	(A)와 (B)는 아니나 R&D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기업 (C)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61.0	80.8	55.2
경남권(부산/울산/경남)	8.9	4.3	8.1
경북권(대구/경북)	1.5	3.8	4.5
전라권(광주/전북/전남/제주)	13.0	5.3	25.9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15.6	5.8	6.3
합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671	4,472	10,845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대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평균 연령으로는 큰 차이 없이 약 50세 정도이나, 여성 벤처기업(A)은 50대가 48.3%로 가장 많고 40대 42.6%인데 비해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B)은 50대(38.7%)와 40대(40.9%)가 여성 벤처기업보다 조금 더 적었고 기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C)은 50대가 44.1%, 40대가 33.7%이다.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B)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13.4%로 여성 벤처기업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나 30대의 비중도 7.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15.4%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았다.

<표 4-9> 대표자 연령대별 분포

(단위: 개소, %, 세)

구분	여성 벤처기업 (A)	벤처기업 후보군 (연구개발인력 보유) (B)	(A)와 (B)는 아니나 R&D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기업 (C)
20대	0.0	0.0	0.5
30대	2.4	7.1	6.3
40대	42.6	40.9	33.7
50대	48.3	38.7	44.1
60대 이상	6.7	13.4	15.4
합계	100.0	100.0	100.0
평균(세)	49.95	50.22	51.53
표본수(가중치부여)	659	4,463	10,834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벤처기업 대표자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26.0%)의 비중이 크지만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도 각각 25.1%, 20.7%로 적지 않다. 반면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경제·경영 전공이 29.8%로 가장 많았고 공학과 자연과학 계열은 각각 19.5%, 19.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세 집단 모두 인문·사회계열과 경제·경영계열의 비중이 높았지만 특히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B)의 경우 그 비중이 더 높아, 이들 기업의 벤처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공이 공학이나 자연과학 계열이 아닌 여성벤처 창업자(기업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0> 대표자 전공분야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여성 벤처기업 (A)	벤처기업 후보군 (연구개발인력 보유) (B)	(A)와 (B)는 아니나 R&D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기업 (C)
인문·사회계열	26.0	24.8	29.0
경제·경영	17.5	29.8	21.4
법	0.0	0.8	1.2
자연과학	20.7	19.1	15.0
공학	25.1	19.5	25.3
예술·체육	10.7	5.8	7.7
기타	0.0	0.2	0.3

구분	여성 벤처기업 (A)	벤처기업 후보군 (연구개발인력 보유) (B)	(A)와 (B)는 아니나 R&D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기업 (C)
합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570	3,617	8,124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기업경영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중점적 기업전략을 비교해 보면, 세 집단 모두 '시장 중심의 고객지향 전략 강화'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C)은 52.7%인 데 비해 여성 벤처기업(A) 32.1%,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B)은 39.6%로 차이가 컸다. 대신 여성 벤처기업은 '설계, 특허 등 제품 기술 차별화'와 '구매원가 절감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각각 25.3%, 20.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B)의 경우 '우수인력 확보'가 10.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11> 중점적 기업전략

(단위: 개소, %)

구분	여성 벤처기업 (A)	벤처기업 후보군 (연구개발인력 보유) (B)	(A)와 (B)는 아니나 R&D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기업 (C)
시장 중심의 고객지향 전략 강화	32.1	39.6	52.7
설계, 특허 등 제품 기술 차별화	25.3	14.1	7.1
브랜드 이미지 등 기업 홍보	13.7	11.7	11.8
우수 인력 확보	5.1	10.1	7.6
구매원가 절감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20.2	14.0	10.7
수급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등 기업 간 협력전략	1.2	6.1	1.4
자금 확보 전략	2.4	2.5	8.4
CSR, 환경경영 등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	0.0	1.3	0.1
기타	0.0	0.7	0.3
합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672	4,472	10,845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금투자여부 및 분야를 살펴보면,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C) 중 46.0%가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여성 벤처기업(A)(27.1%)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 벤처기업의 투자분야는 제품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자금이 40.8%로 가장 많았고, 설비 및 구축물 등의 시설자금 12.5%,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전자금 11.6% 순이었다.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B)은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제품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자금에 투자했다는 비중이 30.9%로 적지 않았다. 반면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C)은 12.2%만이 제품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금투자분야

(단위: 개소, %)

구분	여성 벤처기업 (A)	벤처기업 후보군 (연구개발인력 보유) (B)	(A)와 (B)는 아니나 R&D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기업 (C)
설비 및 구축물 등의 시설자금	12.5	8.9	18.2
제품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자금	40.8	30.9	12.2
판촉 및 광고홍보 등의 판매자금	8.0	10.0	8.3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전자금	11.6	19.1	15.3
해당 없음(투자계획 없음)	27.1	31.1	46.0
합계	100.0	100.0	100.0
표본수(가중치부여)	672	4,473	10,845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제5장

여성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활용실태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여성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과정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면접조사 방법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조사의 조사대상은 벤처기업 관련 전문가(4명)과 여성기업대표(17명)이다. 벤처기업 관련 전문가는 벤처기업확인 평가기관 소속 전문가 1명, 벤처기업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2명, 지방자치단체의 창업보육정책 전문가 1명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대표는 대부분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15명), 그 밖에 연구진이 직접 발굴하였다(2명). 여성기업대표는 이미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여성,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했으나 실패한 여성,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한 경험은 없으나 준비 중이거나 벤처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성기업대표의 집단유형별로 참여자의 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진은 정식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표 이외에 다른 여성기업대표들(약 10명)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면접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표 5-1>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 유형	사례 번호	지역	업종	창업 년도	벤처 확인 연도	연령대	최종 학력	전공
벤처 기업 인증 완료	1	경기	기타 전문디자인업	2015	2016	30대	학사	시각디자인
	2	경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011	2015	40대	석사	공학
	3	강원	화장품 제조업	2007	2007	50대	박사	자연과학/ 경영,경제학
	4	서울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012	2015	30대	학사	예술
	5	경기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013	2014	40대	학사	인문사회
	6	경기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015	2015	40대	석사	자연과학
	7	서울	기타 가정용	2015	2016	30대	학사	인문사회

조사대상 유형	사례 번호	지역	업종	창업 년도	벤처 확인 연도	연령대	최종 학력	전공
			전기기기 제조업					
	8	서울	화장품 도매업	2013	2016	30대	학사	관광학
	9	서울	제조,디자인업	2016	2015	30대	석사	경영/디자인
실패 경험자	10	서울	제조, 수출업	2015	-	30대	학사	인문사회
	11	경기	유아교육문화 콘텐츠	2015	-	40대	학사	관광경영
	12	강원	수공예	2012	-	50대	학사	간호학
벤처 기업 인증 준비/ 희망자	13	서울	제조,도소매업	2012	-	40대	학사	인문사회
	14	서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업	2015	-	30대	학사	인문사회
	15	서울	게임 배급업 (서비스)	2016	-	30대	석사	어학
	16	경기	철강-금속-비금속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1987	-	50대	학사	경영-경제학
	17	경기	외식업, 식음료, 단체위탁급식업	2006	-	50대	석사	식품영양, 경영-경제학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인지 및 정보수집

여성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한 제도의 운영 취지, 참여방법,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 여성창업가들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 인지 시점

벤처기업확인제도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인지하는 시점이 창업 이전보다 창업 이후가 더 많고, 관련 정보수집도 주로 창업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창업자들이 창업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혹은 창업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창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창업 이전에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여성대표들은 17명 중 4명이었는데 이들의 전직은 대학 혹은 민간기업의 연구원이었거나 스타트업 회사 직원이었다. 그 밖의 여성대표들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준비를 하면서 혹은 창업 후 수개월이 지나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인지했다. 아래의 두 사례는 창업 이전에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던 여성대표의 사례이다.

> 전 직장에서 벤처기업 인증과정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었으나, 창업 후 6개월 안에 진행하면 창업초기 기업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을 여기(OO 창업보육센터) 와서 매니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사례번호 1, 시각디자인업, 2015년 7월 창업, 2016년 1월 벤처기업확인인증을 받음).

> 창업 이전에 벤처기업 인증제도가 있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신청방법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창업 후에 자금확보만이 아니라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2016년 4월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5월에 신청했는데 기술보증은 바로 받았지만 벤처인증은 못 받았습니다(사례번호 10, 제조-수출업, 2015년 10월에 창업).

나. 정보수집의 정확성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확인신청을 내는 여성대표도 있고, 제도를 인지한 이후에도 그 기대효과에 의문을 품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만 믿고 신청을 못한 여성도 있었다. 창업한 지 오래된 여성으로 사업이 성숙기에 들어섰으나 앞으로 벤처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여성대표도 두 명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벤처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그 분야에서 벤처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해 잘못된 정보 혹은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성대표도 종종 발견된 반면에, 벤처기업확인 평가방법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여성대표는 거의 없었다.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사례는 “창업한 지 3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창업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르고 경과기간이 길수록 평가기준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벤처기업확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안 된다”고 인지하고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그 밖에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여성대표도 있었다.

> 벤처기업에 관해 각성을 하고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창업업력이 3년을 갓 넘겼을 때라서 (전에 입주했던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매니저[35]가 자격기준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현재의 창업보육센터)에 와서 3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철저히 준비해서 확인을 받았다(사례번호 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011년에 창업, 2015년에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래 사례의 여성대표는 특허권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에 점수 획득이 가능한 평가항목에 노력을 집중했더라면 더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 2012년에 창업하고 2013년에 금융박람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OOO(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특허를 받기 전이라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 쪽에서는 매출도 있고 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벤처인증을 위해 특허 준비를 하다 보니 창업한 지 3년을 넘기게 되었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다(사례번호 13, 제조업-도소매업, 2016년 8월말 현재까지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정부지원 R&D사업을 통해 특허출원 준비 중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평가항목은「벤처기업확인요령」에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성대표는 별로 없다.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특정 평가항목이 벤처기업확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다.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도 다른 평가항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면 벤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업종, 1인 창조기업 여부,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표에 약간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현재의 상태로 성공하기 어렵다면 어떤 평가항목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벤처기업확인 평가를 받는 데, 그리고 사업체를 성장시켜 나가는 데 가장 유리한가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노력이

---

35)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자격과정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매니저들 중에 자격과정이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인력도 있다.

필요한 평가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수도 있는데, 면접조사에서 벤처기업확인에 실패했거나 상담과정에서 부정적 견해를 얻은 여성대표들은 그 원인으로 한 가지 평가항목만을 강조했다(예를 들면, “특허권 없음,” “전공 부적합,” “해당기술의 가치 저평가” 등).

다. 정보수집 경로

여성기업인들이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로 벤처기업에 관한 법령정보, 벤처인(벤처확인·공시시스템),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식적 경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대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기업대표의 모임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나 단편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기업대표들이 정보수집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이유는 입수된 정보를 믿기 전에 정확성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벤처인증확인을 민간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기업확인을 해 주는지 몰랐다가 연구진이 준 질문지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쪽에서 매달 한 번씩 수출우수업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벤처기업인증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고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 지금 입주해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는 확인을 받아도 별 의미가 없고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대행해 주는 컨설팅 업체가 있다고 했다(사례번호 13, 제조업-도소매업).

3. 벤처기업확인 신청 및 평가과정

가. 벤처기업인증 동기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대표들이 벤처기업인증을 받고자 했던 동기를 살펴보면 1)기술력을 평가받으려고, 2)회사운영의 기본적 요건이므로, 3)정부사업

에 참여기회를 갖는 데 유리하므로, 4)홍보효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등이다. 물론 기술력을 평가받으려고 신청했는데 홍보효과도 있었다는 등의 파급효과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벤처기업확인 신청 시점에 초점을 두고 신청동기를 분석하였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던 기업도 있다. 일부 여성대표는 특별히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보증이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벤처기업확인 평가를 받았다.

먼저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 혹은 인정받으려는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한 사례(2명, 사례번호 1, 2번)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 명은 창업한 지 5개월 정도 시점에서 벤처기업인증을 받았는데 국내외 시장을 목표로 GUI(graphical user interface)로 영상디자인을 그래픽으로 구성하는 일을 하는 신생기업 대표이다. 이 여성대표는 관련 분야에서 직업경력이 많아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인증 받으려는 동기가 강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국내외 영업을 하는 데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다른 한 명은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대표인데, 창업 이후 약 4년 정도 R&D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여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그것을 인증 받고자 했다.

정부의 창업지원 혹은 R&D 지원사업에 참여기회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데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17개 사례 중에서 5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사례 중에서 2개(사례번호 4, 8번)가 있고,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했으나 평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 혹은 아직까지 신청한 적은 없으나 준비 중인 여성기업으로 3개(사례번호 11, 13, 14번)가 있다. 창업 이전에 오랫동안 R&D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R&D활동을 위주로 창업한 여성대표들(2명, 사례번호 3, 6번)은 벤처기업인증을 회사운영의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것 자체로부터 큰 혜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 정부의 R&D 사업 참여를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본다.

R&D활동에 유리하다는 것 이외에 홍보, 세제지원 등을 위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사례는 17개 회사 중 하나(사례번호 8)이며 이 회사도 부차적인 목적으로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벤처기업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 중에서도 정부지원사업의 가산점에 주목하는 회사(사례번

호 14)가 하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벤처기업인증 동기가 주로 R&D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성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과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기술성평가를 받다가 벤처기업인증도 함께 받고 있다(사례번호 4, 5, 7, 9, 12). 이들과는 반대로 기술력 인정을 받기 위해 벤처기업인증을 받고자 했고 자금지원은 필요 없었다는 여성기업도 있었다.

<표 5-2> 벤처기업인증의 동기

조사대상 유형	사례 번호	업종	벤처기업인증 동기
벤처 기업 인증 완료	1	기타 전문디자인업	- 창업한지 1년 미만으로 회사의 기술수준을 평가받고자 했음.
	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자 했음.
	3	화장품 제조업	- 벤처는 곧 R&D라고 생각할 정도로 R&D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벤처인증이 회사의 R&D활동에 도움이 됨.
	4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금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벤처인증도 함께 받았음. - 홍보효과나 시장의 신뢰성 확보보다는 정부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5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 받는 과정에서 벤처인증을 받았음.
	6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벤처인증으로 큰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기술개발기업에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여 벤처인증을 받았음.
	7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자금확보를 위해 기술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벤처인증 평가도 받았음.
	8	화장품 도매업	- 우선 광고마케팅을 위해 벤처인증을 받았음. 현재 라디오 광고 중이며 광고비의 70%를 지원받음. -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음.
	9	제조, 디자인업	-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며 벤처기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조사대상 유형	사례 번호	업종	벤처기업인증 동기
			것은 아님.
실패 경험자	10	제조, 수출업	- 자금확보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함. 벤처기업인증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1	유아교육문화 콘텐츠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기회를 갖기 위해 벤처인증이 필요함.
	12	수공예	- 기술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벤처기업확인 평가를 받았음.
벤처 기업 인증 준비/ 희망자	13	제조,도소매업	-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 -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데 유리함.
	14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업	- R&D사업 참여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인력확보, 세제지원, 브랜드 홍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나. 인증에 어려움이 없었던 여성기업 사례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표 중에서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데 성공한 사례는 아홉 명인데, 그 중에서 여섯 명은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기 전에 기술성 혹은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들이 벤처확인신청 이전에 갖춘 실적은 R&D 사업추진, 특허출원 및 등록, 연구개발 인력 및 조직, 글로벌 마케팅 등이다. 여섯 명의 여성기업 대표 중에서 네 명은 이전 직장(대학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스타트업 기업)에서 창업에 필요한 기술성 확보 준비를 단단히 해 두었다. 이들 회사의 업종은 각각 화장품 원재료 제조 혹은 도매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건축물 내부에 쓰이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 유아용 침구 관련 제조업이다. 그들의 대학전공과 직업경력을 고려할 때 경영주의 기술능력도 우수한 편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사례번호 8은 화장품 도매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벤처기업 확인신청 이전에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사업결과물로 국내시장 및 해외수출에 성공하여 매출액 실적이 우수했다.

<표 5-3> 벤처기업확인 신청에 어려움이 없었던 여성기업 사례

사례번호	업종 (주생산품)	어려움이 없었던 여성대표의 특징
3	화장품 제조업	- 대학의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등을 공부했으며 박사후과정에서 신경과학을 공무하였음. 이후 대학연구소에 근무하며 유전자 변형-조작 관련 분야의 연구 경험이 있음. - 처음 창업할 때 강원도 내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하였고 이후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하였음. 이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정보교류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 - 바이오분야는 처음부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종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스펙을 쌓았음.
4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전 직장이 동일 업종에서 스타트업 회사여서 벤처기업인증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 정부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많았음.
5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 유사업종(반도체, 건설)의 기업체 근무경력이 많고, 기업체 연구소 경력도 있음. - 창업 이전에 연구개발활동이 있었음.
6	정형 외과용 및 신체보정 용 기기 제조업	- 임상실험 회사에서 기술개발인력으로 근무경력이 많으며, 현재 사업체도 임상실험을 위주로 함. - 창업 당시 함께 일할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하여 창업함. - 특허등록 실적, 정부연구개발 참여 실적 등이 있음.
8	화장품 도매업	- 정부지원사업으로 R&D 사업의 성과물을 가지고 바로 해외판매(중국) 실적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음. 사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춤.
9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유아용)	-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을 받을 때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인지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 신청의 필요성을 느낌. 벤처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 준비를 하였음. - 벤처기업확인 신청 이전에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였음.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음.

다.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던 여성기업 사례

벤처기업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던 사례로 세 명(사례번호 1, 2, 7)이 있다.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했으나 평가에서 탈락하고 다시 신청하고자 노력하는 사례가 두 명(사례번호 10, 11)이다. 이 다섯 명의 여성기업 대표들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혹은 하고 있는가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4> 여성기업의 벤처확인인증 노력 사례

사례번호	업종 (주생산품)	벤처기업 확인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
1	시각 디자인업	- 디자인을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컨설팅을 통해 해소 - 기술성 증빙자료로 포트폴리오 작성에 힘씀. - 창업 6개월 이내에 매출액 1,000만원을 올리기 위해 노력
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청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가 기술력을 믿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R&D 과제를 3개 수행 - 우리은행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우수청년창업가상 최우수상(2013년) 수상
7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자외선살 균정화기)	- 첫 번째 신청 시 혼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탈락함. - 두 번째 신청서를 내기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을 위한 세무회계, 노무,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벤처기업확인신청을 다시 한 결과 인증에 성공함.
10	제조, 수출 (건강관리 기구)	- 2015년 10월에 창업하고 2016년 4월부터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5월에 신청하였으나 보증서 지원만 받고 벤처기업확인에는 실패하였음. - 현재 수행 중인 R&D 과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 다시 한 번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할 예정임. 그 때까지 R&D 과제 수행과 R&D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11	교육문화 콘텐츠	- 교육콘텐츠로는 벤처로 인증받기 어렵고 제조나 기술 관련 부분이 있어야 벤처인증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음.

사례번호	업종 (주생산품)	벤처기업 확인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
	(인형극)	-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엑셀러레이팅 연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아 유아용 교육콘텐츠 공유경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 이 플랫폼은 유아용 교육콘텐츠 분야의 소규모 사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라. 평가기준 관련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1)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부족

벤처기업인증을 이미 받은 여성기업 대표나 아직 확인신청을 한 적이 없이 벤처기업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기업 대표 모두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거의 모르고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표 중에서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았거나 인터넷에서 설명자료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사례는 두 명에 불과하다. 한 명(사례번호 14, 벤처기업인증 준비 중)은 블로그를 통해서 벤처기업확인 평가기준에 관한 자료를 접해본 적이 있으나 그것이 전부인지는 모르겠다고 했고, 다른 한 명(사례번호 10, 벤처기업인증 실패 경험자)은 기술보증기금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벤처인 홈페이지에서 평가기준에 관한 자료를 구해본 적이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표들은 벤처기업확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개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2) 기술분야와 전공 및 직업경력의 연관성 부족

여성 중에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낮은데 여성 벤처기업인도 남성 벤처기업인에 비해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낮다. 이것은 벤처기업확인 평가에서 경영주의 기술능력을 평가받는 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표 중에서 벤처기업인증을 완료한 사람은 9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이 대학 전공과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낮다(사례번호 5, 7, 8). 또한 벤처기업인증에 실패한 세 명의 사례(사례번호 10, 11, 12)와 벤처기업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여성기업인 5명(사례번호 13, 14, 15, 16, 17)도 현 업종의 기술분야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없거나 낮다.

전공과 기술분야가 일치하지 않아도 해당 기술분야와 밀접한 직업경험이나 교육훈련경험이 풍부한 여성들도 있다. 이런 경우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에 대한 평가점수는 낮아도 기술경험수준의 평가점수는 잘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개의 심사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여성기업 대표들은 평가기준(기술성 평가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공 불일치로 인해 기술경험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전공 불일치가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했는데 담당자 면접에서 관련 분야의 내 교육수준이 고졸밖에 안 된다면서 신청서 자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 나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이고 이전 직업경험도 유관분야(자외선 살균 기술)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에 수입품(유럽의 고가 그릇) 판매 사업체 대표,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사업체 마케팅 과장을 했다.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본 육아경험에 비추어볼 때 자외선 살균기구의 시장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서 창업하게 되었다. 그런데 육아경험이나 마케팅 분야의 직업경력이 벤처기업확인 평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사례번호 7,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벤처기업확인에서 탈락했는데 이유는 전공 부적합이라고 생각한다. 개발 중인 상품이 건강관리기구인데 창업하기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관련 분야에 대해 교육도 받고 창업준비를 지속적으로 했으나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것은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았다. 이전의 직업경력은 개인사업(1.5년), 환경업종 대기업 인사업무(6년), 대기업 계열 IT솔루션 회사 해외영업부분(7년), 기타 프리랜서 통번역 업무(7년) 등이다(사례번호 10, 제조-수출업).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데 전공 부적합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창업 아이템은 난연원단(불에 타지 않는 원단)인데 전공이 인문학부이다. 난연원단 기술개발 역량은 중소기업에서 원단수출을 위한 기술영업 경력(17년)을 통해 현장에서 습득했다. 중소기업청의 여성전용 R&D 사업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R&D 인력을 채용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사례번호 13, 제조-도소매업).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한 적이 없으나 앞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지금은 벤처기업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준비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전공 불일치로 인한 감점요인이다. 사업 아이템이 일정관리 앱인데 전공은 인문사회계이다. 앱 개발 관련 기술창업은 기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기술 우위성보다 사회심리적 요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 직장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업무, 기획 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12년 했는데, 홍보할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어지면 제품의 본질을 파악하고, 소비자를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했다. 일정관리 앱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연구하고 다른 앱을 때맞추어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오랜 직업경험을 통해 제 영업력으로 신규 광고주 영입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있다. 기술적으로도 일정관리 앱을 개발해 줄 개발 팀도 확보해 둔 상태이다. 디자인에서 마케팅까지 풍부한 역량, 팀 협업, 영업력 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성과를 내는 일

에 자신 있다(사례번호 14,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디자인업).

위의 사례들과는 반대로 기술분야와 대학전공 간에 관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례도 있다. 사례번호 5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으나 졸업 후 IT계열 기업, 건설분야 기업 등에서 기술직과 연구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창업 이전에 기술개발이 일부분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사례번호 8의 경우 화장품 도매업종에서 창업[36]했는데 대학전공은 관광학이고 대학 졸업 후 계룡대에서 10년간 근무경력이 있다. 이 사례는 정부의 창업지원금으로 창의적인 시제품을 만들었다가 중국시장에서 매출액이 커서 사업성을 높게 평가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3) 평가자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편차 문제

경영주의 대학전공 및 직업경험이 해당기업의 기술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평가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표들 중에서 첫 번째 신청에서 탈락한 후 두 번째 신청에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당사자는 두 번째 평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평가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처음 신청은 OOO에 하였으나 확인을 받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로 OOO에 신청했는데 평가자로 남성과 여성 각각 한 명씩 오셨다. 남자 평가자는 본 사의 자외선 살균 기술의 유용성에 관해 좋은 평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 여자 평가자가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아마도 남자 평가자만 있었다면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자 평가자께 상품에 대해 설명(서류, 사진 등 상세히 첨부)을 해도 (유용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시장이 보인다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느껴졌다(사례번호 7,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연구진은 면접조사에서 얻은 주요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임원 및 회원(5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때 여성의 취약점이라

---

36) 병원의 장기입원 환자들을 위한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일반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아 일반인을 위한 국내시장과 중국시장에 진출하였다.

할 수 있는 전공과 기술분야의 불일치, 평가자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의 편차에 관해서도 토론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기업인들은 남성 평가자들이 남성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전공과 기술분야 간에 불일치가 있어도 기술개발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전공과 기술분야 간 불일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4.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앞에서 여성기업들이 벤처기업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1)기술력 인정, 2)회사운영의 기본적 요건 구비, 3)정부사업 참여기회, 4)홍보효과 및 세금감면 혜택 등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여성기업들은 실제로 기대했던 효과를 얻고 있는가? 벤처기업인증이 여성기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가장 많은 여성기업이 공통적으로 얻고 있는 효과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지원 R&D 사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6명)이 많았다. 그 밖에 우수인력 확보, 세제혜택, 광고비 할인 혜택을 받은 여성기업들이 있다.

<표 5-5>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사례번호	업종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1	기타 전문디자인업	-창업 활성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향후 우수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클라이언트 미팅, 여성사업자에 대한 인식개선) -향후 R&D을 위한 인력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화장품 제조업	-창업 초기 기업은 매출액이 없으므로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 받는다는 것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됨. -연구소 및 제조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됨.

사례번호	업종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했음. -우수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4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는 거의 없음(관련 업종에서 벤처기업인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가점을 받았음(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제혜택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깝게 받지 못하였음(3년이 갓 넘은 시점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음).
5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도움이 됨(중소기업청 선도벤처기업연계 기술창업사업에서 지원을 받음). 정부지원사업을 위해 벤처기업인증을 유지하고자 함.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회사 자동차 구입) 75% 감면 받음. -제조업 벤처기업에게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잘 안해줌.
6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업홍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정부R&D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임. 기업설명회를 할 때에도 당연히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함. -투자유치 시에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았다는 것이 도움이 됨. -미래부 투자연계형 R&D기업지원사업, 산업부 R&D사업 두 가지를 유치하였음(2년간 30억),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 VC 투자유치가 필수인데 투자유치에 성공함. -벤처기업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받음. -우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음.
8	화장품 도매업	-라디오 방송 광고비 할인 혜택을 받았음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바이어에게 줄 수 있음.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됨.
9	제조,디자인업	-R&D사업 참여에 도움이 됨. -그외의 혜택은 잘 모르겠으며 아직 받은 적이 없음.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가.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

○ 벤처기업 수는 2015년 말 현재 31,260개이며 여성 벤처기업은 2,566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에 4.1%에서 2015년에 8.2%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 여성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1,788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71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49개) 등이다. 전체 벤처기업에서 여성기업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24.1%), 여가,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5.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4.5%), 도소매업(1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2%) 순이다.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도 소수의 벤처기업이 있으나 여성기업은 전혀 없다.

○ 벤처기업확인유형은 기술평가보증유형이 81.8%로 가장 많은데(2016. 8. 24. 기준), 이는 남녀 벤처기업에 공통된 현상이다.

○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2010년 52.7%, 2015년 53.8%)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여성 벤처기업도 경기도에 26.1%, 서울에 21.6%가 위치해 있다(2015년 기준).

○ 여성 벤처기업 대표자는 남성 벤처기업 대표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고졸 비중 남성 11.1%, 여성 30.7%), 이공계(특히 공학) 전공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 대졸자의 경우 남성은 65.7%, 여성은 18.0%가 공학 전공자이고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남성은 67.5%, 여성은 29.5%가 공학 전공자이다.

○ 정부 정책지원금 수혜경험을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은 R&D 자금과 융자(정책자금)를 지원받은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보증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남성보다 높다. R&D 자금 지원경험 비율은 남성 51.1%, 여성 43.0%인데, 보증서 지원 경험 비율은 남성 40.7%, 여성 53.4%이다.

○ 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인력 보유 비율이 낮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율이 남성 57.5%, 여성 45.8%로 11.7%p의 차이가 있

다. 자연히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남성(14.2%)보다 여성(22.1%)이 더 높다.

나. 여성기업의 R&D활동 참여도/ R&D활동 참여 여성기업의 특성

○ R&D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기업 중에서 연구개발인력(조직)을 보유한 여성의 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여성 벤처기업 중에서 연구개발인력(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61.5%이다. 벤처기업, 혹은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기업), 1인 창조기업이 아닌 일반 여성기업은 7.3%만이 연구개발인력(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 여성기업의 24.2%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성기업들이 자체기술개발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26.6%)”과 “개발인력 확보 곤란(16.0%)”이다.

○ 여성기업들이 정부정책을 활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49.8%)”이다.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롭다(20.2%)”거나 “신속한 지원이 부족하다(11.8%)” 등의 기타 의견은 그보다 훨씬 비중이 낮다. 그러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롭다(27-29%)”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인력(조직)을 보유한 여성기업(벤처기업 후보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 분포, 권역별 분포, 기업의 중점전략 및 자금투자분야 측면에서 일반 여성기업보다 여성 벤처기업에 훨씬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 여성기업의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활용실태

1)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인지 및 정보수집

○ 벤처기업확인제도나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인지하는 시점이 창업 이전보다 창

업 이후가 더 많고, 관련 정보수집도 주로 창업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과 같이 창업 이후 일정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우대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해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정보수집 경로도 공식적인 경로(벤처기업확인기관 방문 및 문의, 벤처기업공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열람 등)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편적인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데 적절한 시점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여성대표의 경우에도 기술성 평가표나 평가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본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블로그 등에서 자료를 구하는 등과 같이 공식적인 정보제공기관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벤처기업확인 신청 및 평가과정

○ 벤처기업인증의 주된 동기는 1)기술력을 평가받으려고, 2)회사운영의 기본적 요건이므로, 3)정부사업에 참여기회를 갖는 데 유리하므로, 4)홍보효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등이다. 상당수의 여성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과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기술성평가를 받다가 벤처기업인증도 함께 받고 있어, 보증/대출 이외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열의가 높지 않다.

○ 벤처기업인증을 이미 받은 여성기업 대표나 아직 확인신청을 한 적 없이 벤처기업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기업 대표 모두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거의 모르고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대표(17명) 중에서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았거나 인터넷에서 설명자료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사례는 두 명에 불과했다.

○ 여성 중에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낮은데 여성 벤처기업인도 남성 벤처기업인에 비해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낮다. 이것은 벤처기업확인 평가에서 경영주의 기술능력을 평가받는 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경영주의 대학전공 및 직업경험이 해당기업의 기술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우

평가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3) 벤처기업인증이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

○ 벤처기업인증이 여성기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여성기업이 공통적으로 얻고 있는 효과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 우수인력 확보, 세제혜택, 광고비 할인 혜택을 받은 여성기업들이 있다.

2. 벤처기업 진입 이전 단계의 지원정책

가. 정책제안의 배경

○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기술성이 우수해야 하므로 연구개발활동은 벤처기업 진입에 필요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여성기업 중에서 연구개발인력이나 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8.4%에 불과하다(<표 4-2>).

○ 여성기업의 자체기술개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개발자금의 부족(26.6%)이며 그 다음은 개발인력 확보 곤란(16.0%)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R&D 자금 지원사업과 인력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여성기업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 중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남성기업의 경우 51.1%이나 여성기업은 43.0%이다(<표 3-19>). 여성기업들은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37]을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49.8%)을 들고 있다.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벤처기업 수를 늘리고자 홍보와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는 없겠으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정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사업운영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들이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 제도에 대한 인지시점

37) 자금, 인력, 세제, 기술, 판로, 정보화, 수출, 사업전환 및 재창업 등에 관한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이 창업 이후인 경우가 다수 있었고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나. 정책제안

1) 여성기업 R&D 지원정책 성과 모니터링 및 타부처 확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청은 2015년부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전용 R&D 자금 102억원을 확보하여 한 과제당 최대 1년간 1억원(총 사업비의 80% 이내)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1)여성기업, 2)경력단절여성 신규고용 중소기업, 3)예비 여성창업자(2인 이상)이다[38]. 이 사업은 2016년에 사업명이 '여성참여활성화R&D과제'로 수정되었으며, 지원 조건과 지원규모는 2015년과 같다.

○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부는 여성기업과 여성연구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가산점제도로는 여성기업의 R&D 참여 확대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여성전용 R&D 사업을 도입하였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여성참여활성화R&D과제'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여성참여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가산점제도의 대안으로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R&D 사업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의 1)지원대상의 적절성, 2)지원규모의 적절성(지원기업 수), 3)여성고용증대 효과, 4)R&D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 가산점제도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청 이외에 타 부처의 R&D 지원사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래창

38) 중소기업청(2015c),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 전용 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58호) 참조.

조과학부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분야로 “여성과학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이공계 여성교원(전임, 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여성연구원이며, 2015년에 626과제가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39].

○ 2015년에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예산(기금 포함)으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한 과제의 연구비 총액은 3조 3,969억원이며 과제 수는 총 11,819건이다. 중소기업청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지원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며 이 두 부처가 중소-중견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한 과제 수는 각각 3,067건과 766건이다. 이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연구비 지원규모가 큰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의 여성전용과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표 6-1>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및 과제 수(2015년)

부처명	연구비(백만원)			과제 수(건)		
	전체	여성과책	여성과책 연구비 비율(%)	전체	여성과책	여성과책 과제 수 비율(%)
산업통상자원부	1,556,966	40,984	2.6	3,067	101	3.3
중소기업청	797,584	40,458	5.1	5,759	502	8.7
미래창조과학부	350,673	13,612	3.9	766	36	4.7
방위사업청	282,002	58,085	20.6	139	1	0.7
환경부	79,746	2,656	3.3	235	15	6.4
보건복지부	68,071	14,283	21	282	46	16.3
국토교통부	62,725	825	1.3	123	3	2.4
범부처 사업	48,346	5,497	11.4	139	10	7.2
농림축산식품부	44,789	4,812	10.7	507	52	10.3
해양수산부	34,424	1,262	3.7	222	12	5.4
문화체육관광부	30,368	1,343	4.4	122	13	10.7
농촌진흥청	21,639	2,724	12.6	300	39	13

39) 한국연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사업목록>신진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안내 참조.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biz.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319&c_now_tab=0, 검색일: 2016.9.30.)

부처명	연구비(백만원)			과제 수(건)		
	전체	여성과책	여성과책 연구비 비율(%)	전체	여성과책	여성과책 과제 수 비율(%)
국민안전처	11,429	360	3.1	68	4	5.9
기상청	3,290	171	5.2	31	2	6.5
식품의약품안전처	2,176	841	38.7	22	10	45.5
산림청	1,183	70	5.9	20	1	5
원자력안전위원회	880	65	7.4	5	1	20
교육부	348	40	11.5	9	1	11.1
행정자치부	344	0	0	3	0	0
법무부	0	0	0	0	0	0
소방방재청	0	0	0	0	0	0
안전행정부	0	0	0	0	0	0
총합계	3,396,983	188,087	5.5	11,819	849	7.2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DB에서 추출함.
(http://rndgate.ntis.go.kr/matrix.do, 검색일: 2016.9.1.)

2) 여성기업의 경력단절여성 R&D 인력 활용 지원확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미래창조과학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지원정책의 일환으로「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의 여성과학기술인이 R&D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건비(1인당 연간 2,000만원, 최대 3년간,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대응자금 필수)를 지원한다[40].

○ 위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성 R&D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대학(산업대, 기술대, 전문대 포함), 정부출연연구원, 기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40)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16). 2016년도「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공고문 참조.

전담부서, 의료법인 등인데, 경력단절-미취업 여성연구인력이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보다 대학, 정부출연연구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 벤처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R&D 인력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 지원기간(최대 3년) 종료 이후 여성 R&D 인력의 정규직 취업성과를 취업처 유형(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따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대표자의 성별에 따른 비교를 추가하도록 한다. 그 결과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원보다 기업부설연구소(특히 여성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환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일반기업에 비해 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여성(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정규직 R&D 일자리, 혹은 5-10년씩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안착하는 여성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R&D 인력이 여성 벤처기업의 R&D 일자리를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의 일자리 보다 선호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인건비, 복리후생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석·박사 인력은 중소-중견기업 R&D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최소한 석사 4,000만원, 박사 5,000만원의 기준연봉(기본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이상을 받는다.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기준연봉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기준연봉의 50%(석사 2,000만원, 박사 2,500만원)의 인건비를 분담한다[41].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석사 혹은 박사인력을 여성 벤처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유사한 정도의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 벤처기업 혹은 향후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여성기업들이 연봉 4,000-5,0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여성 R&D 인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수요진단도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의 인건비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의 인건비 지원기간도 3년이나 기업이 해당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추가로 최대 3년간 표준급여

41) 산업통상자원부(2016).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기준으로 30-4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여성 R&D 인력의 고용이 유지되려면 R&D 인력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성기업에 사업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으로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할 경우 기업별 1명에 한하여 인건비의 50%(1인당 평균 9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지원대상 여성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미취업 여성이다[42].

3) 여성기업의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 전담인력 활용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지원팀)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4년 4월에「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43]. 이 방안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25개)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2016년 7월 기준 291명[44])을 두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을 2017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은 논문이나 특허가 아닌 중소-중견기업 협력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다[45].

○ 이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K-Club(패밀리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IST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매출 500억 내외의 기술력 기반이 있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술지원, 마케팅, 자금, 인력, 경영컨설팅 등을 밀착지원하고 있다[46]. 동 센터의 관계자는 여성기업들이 출연(연)의 중소-중

---

4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15). 2015년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참조.

43)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안건(심의연월일: 2014.4.23.)

44) 미래창조과학부(2016),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밀착지원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6.8.4.), p.2.

45)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안건(심의연월일: 2014.4.23.), p.16.

46)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6), 2016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함께하는 중소-중견기업 맞

견기업 전담인력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6)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올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사와 KIST 연구자가 참여하는 기술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다[47]. 이 기술교류회에는 12개 여성기업대표, 관계자 및 약 20여 명의 KIST연구자가 참여하여 여성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향후에도 연간 2회로 나누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을 포함한 연구진을 여성기업과 1:1로 매칭하고 사업체 방문 등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여성기업 기술지원 사례를 다른 정부출연연구원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여성기업 관련 단체[48] 등을 통해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여성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출연(연)의 연구개발분야 특성에 맞추어 지원 가능한 여성기업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여성기업의 R&D 정보활용능력 제고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중소기업청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참여활성화R&D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대표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지원사업에 여성기업도 남성기업과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6)의「2015 여성기업백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여성기업의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춤형 지원 프로그램, p.18.

47)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6), KIST, 여성 기업 R&D지원 앞장 서, KIST 보도자료(2016.6.16.).

48) 한국여성경제인협회(중소기업청 소관), 한국여성벤처협회(중소기업청 소관), 21세기 여성CEO연합(기획재정부 소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여성발명협회(특허청 소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 소관) 등이 있다.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2015년 총 1,118개사) 중에서 여성기업은 48개사(4.3%)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지원기업 154개사 중에서 13개사(8.4%)만이 여성기업이며(2014년 기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574개 지원기업 중에서 80개사(13.9%)가 여성기업이다(2014년 기준).

○ 정부가 지원하는 R&D 사업에 여성기업의 수혜율이 남성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여성기업들이 R&D 지원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R&D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활용능력이 낮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 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여성벤처협회도 협회 자체사업인 '여성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R&D 기획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R&D 기획역량에 앞서 R&D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정보활용능력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여성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R&D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자금지원, 인력지원 등)에 대한 여성기업의 인지도, R&D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이용실태(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전 과정), 여성기업이 희망하는 R&D 지원사업 정보제공 방법, 여성기업의 관점에서 본 R&D 지원사업 정보활용 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2015a)이 2015년 4월에 발표한 「2015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에서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사업을 살펴보면, 1)지역별 여성 CEO 교육(자발적 정보교류 워크숍), 2)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활성화, 3)여성기업인 정책건의 전용창구 마련이 있다.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여성기업 통합정보망이 정부지원사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역

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러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정보 공급자 위주의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려 하는 전략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 R&D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은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이외에도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춘 기관들이 많다(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R&D 정보활용능력 자체가 취약한 여성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R&D 지원사업 정보제공 자체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활용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기업의 R&D 정보활용능력 제고 프로그램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정보제공 강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벤처정책과, 공공구매판로과)

○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기업통합정보망 운영)를 통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홍보(교육)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전국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확인제도 홍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와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대표자들 중에 창업보육센터의 매니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벤처기업인증 기회를 놓친 사례가 있다. 전국의 창업보육센터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보수교육 참여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자격이나 교육훈련 경험을 갖추지 못한 매니저들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역량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여성기업 이외에 벤처기업 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기업들을 회원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여성특화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를 신규로 지정받아 지정석 15개실, 공용석(5인) 1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벤처협회를 통해 벤처기업확인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49]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동 법 시행령 제12조). 이 센터는 동 법에 근거한 여성기업실태조사의 시행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와 지원제도에 관한 인지도,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를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인증 이외에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인증, 경영혁신형 기업(메인비즈)인증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수요를 동시에 조사하여 적절한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가. 정책제안의 배경

○ 벤처기업확인 신청 기업에 기술성 평가표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기술성 평가 결과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여성대표자는 기술성 평가에서 전공 및 직업경력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가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낮고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유관분야의 직업경력도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다.

---

4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12&efYd=20160930#AJAX, 검색일: 2016.9.1.)

○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평가가 상대평가인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표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결과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를 들어 융합기술분야(예, 예술 및 디자인+정보기술, 마케팅+정보기술 등)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의 전공과 관련성(기술지식수준 평가), 혹은 직업경력과의 관련성(기술경험수준) 판단이 평가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표들 중에는 여성에 대한 평가자의 선입견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었다.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6:21)의「2015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의 25.2%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느끼고 있다(조금 느낀다 20.9%, 많이 느낀다 4.3%).

나. 정책제안

1)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보완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벤처인 홈페이지의 “벤처확인”을 통해 기술성평가의 평가단 구성과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벤처기업의 90% 가량이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혹은 예비벤처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모두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 따라서 벤처기업인증을 희망하는 여성기업들에게 기술성 평가의 평가단 구성,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데 는 <표 2-3>의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 평가표와 <표 2-8>의 예비벤처기업용 기술성 평가표만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성 평가표는 평가항목/심사항목과 배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평가단의 구성과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표 6-2> 벤처인 홈페이지의 “벤처확인”의 정보제공 내용

제 목	내 용
벤처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우대제도 안내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 매뉴얼
벤처확인신청 절차	-회원가입(의무) -벤처기업확인신청(신청서 작성) -벤처확인서식 다운로드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벤처확인 신청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처 (평가수수료,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확인제도 및 법률관련 문의처, 기타 안내)
벤처확인요건	-벤처기업유형별 기준요건 (<표 2-3>, <표 2-8>의 기술성 평가표 포함)
벤처확인신청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의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벤처확인서 재발급	-재발급 신청 접수, 영문확인서 신청접수
벤처확인연장	유효기간(2년) 만료 후 자동연장이 안되고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친다는 안내
벤처확인 FAQ	-벤처기업확인제도 관련 질의 응답 -벤처인 이용 관련 질의 응답 -벤처기업 우대지원 관련 질의 응답 -기타 질의 응답
벤처확인서식 다운로드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연개발기업용 사업성 평가표, 기술평가-대출기업용 기술성 평가표, 예비벤처기업용 기술성 평가표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별 연구개발투자 비율 -연구개발기관 사업성 평가기관
벤처확인 자가진단	-신청가능한 벤처확인유형 판단도구

자료 :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확인(http://www.venturein.or.kr, 검색: 2016.9.1.).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운용요령(2016. 4. 5. 개정)[50]」을 보면 「벤처기

50) http://www.kibo.or.kr/src/pds/kbz900.asp?keyword=6, 검색일: 2016.9.30.

업확인요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 2-3>과 <표 2-8>의 기술평가표 대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과 배점이 약간씩 다른 다양한 평가표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술평가운용요령」의 제15조에 의하면 평가대상기업의 업력, 보증신청금액, 평가목적, 평가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평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KTRS 기술평가표, KTRS-SM 기술평가표(스타트업 모델), KTRS-BM 기술평가표(기본모델), 1인 창조기업 기술평가표(기술기반용), 1인 창조기업 기술평가표(지식기반용), 청년창업기업 기술평가표, GTRS 기술평가표(에너지원 기술), GTRS 기술평가표(고효율화 기술), GTRS 기술평가표(친환경생산 및 사후처리 기술), 예비창업자 기술평가표, 등 다양한 기술평가표가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확인업무 세부지침(2014.10.22. 개정)[51]」은 평가반의 구성(제5조)과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을 상세히 보여준다. 예를 들면 <표 2-3>의 기술성 평가표에서 "기술지식수준"과 "기술경험수준"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 심사항목에 관해서도 평가기준이 상세히 정의되어 있다.

○ 이처럼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요령이나 평가지침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벤처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단 구성,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여성기업대표들은 <표 2-3>과 같은 기술성평가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표 6-3>과 같이 심사항목별로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

51)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n_news/announce/company_rule.xml&page=05, 검색일: 2016.9.30.

<표 6-3> 벤처기업확인평가 시 지식기술수준 및 기술경험수준 평가기준

<table>
<tr><th>심사항목</th><th colspan="5">평가기준</th></tr>
<tr><td rowspan="3">지식기술
수준</td><td colspan="5">경영자의 전공분야, 취득학위 및 자격증 등을 “기술자격 및 학력별 계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토한다.</td></tr>
<tr><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d>E등급</td></tr>
<tr><td>특급기술자</td><td>고급기술자</td><td>중급기술자</td><td>초급기술자</td><td>기타</td></tr>
<tr><td rowspan="3">기술경험
수준</td><td colspan="5">경영자의 동업종 근무경력을 평가한다.
[검토방법]
-동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이하의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td></tr>
<tr><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d>E등급</td></tr>
<tr><td>근무경력
20년 이상</td><td>근무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td><td>근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td><td>근무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td><td>근무경력
1년 미만</td></tr>
<tr><td rowspan="3">기술인력
관리</td><td colspan="5">기술개발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중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여 평가한다(이직률에 대한 업종별 평균은 노동부 통계를 참조).
[체크항목]
-기술개발인력 대상 인센티브시스템(직무발명보상관리 등)이 갖추어져 있다.
-최근 1년 이내 기술담당 임원, 주요기술 개발 관련 핵심인력의 퇴직사실이 없다.
-기술인력 교육훈련비가 업종평균보다 높다.
-기술개발인력 평가 및 목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비라 함은 근로자의 교육훈련시설(일반적으로 교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는 제외)에 관한 비용, 지도원에 대한 수당, 사례, 위탁훈련에 소용된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교육훈련비의 업종평균 - 종업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 노동부(노동통계, laborstat.molab.go.kr)</td></tr>
<tr><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d>E등급</td></tr>
<tr><td>4항목 이상
충족</td><td>3개 항목
충족</td><td>2개 항목
충족</td><td>1개 항목
충족</td><td>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확인업무세부지침(2014.10.22. 개정)」별표 1.

2) 벤처기업확인 평가전문인력 풀의 여성비율 보완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평가에는 두 명의 평가자가 참여하며 대부분의 평가자는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이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벤처기업확인업무 세부지침(2014.10.22. 개정)」제5조(평가반 구성 등)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 평가는 2명(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의 평가반이 담당한다. 평가자는 평가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본부에 벤처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2)자체 평가규정 개정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다.

○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 평가전문인력 풀에서 적정 비율의 여성 평가자를 확보하려면 1)벤처기업확인기관 소속 평가전문인력의 여성비율, 2)외부 전문가로 활용하는 인재풀의 여성비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52]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53]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평가심의위원회나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단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여성비율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의 비율 이상으로 평가전문인력의 여성비율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

52)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16.9.1.)

53)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3) 벤처기업확인 평가결과의 통지방법 보완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벤처기업확인평가의 평가결과는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54].

○ 벤처기업의 80%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평가에 앞서 상담을 통해 신청기업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기업대표자들 중에는 평가에서 탈락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지는 않았어도 불만이 있었거나, 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따라서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게는 서면으로 평가결과를 통지하고, 평가항목별로 평가자의 의견을 기록하여 서면통지에 첨부한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오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재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어떤 심사항목에 관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성공과 실패 여부만을 통지함에 따라 실패한 여성기업에서 그 원인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전공과 기술분야가 불일치해서, 혹은 특허가 없어서 벤처기업을 인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었다.

---

54) 중소기업청(2015a), 벤처기업확인요령(2015.8.11.) 제6조 참조.

4. 벤처기업지원제도 활용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가. 정책제안의 배경

○ 벤처기업확인 신청동기를 분석한 결과 특별히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기보다, 자금확보(보증/대출)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인증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제도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여성들이 많았다.

○ 벤처기업 지원제도 중 세제혜택의 경우 창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만 효과가 있는데, 벤처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적시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지 못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창업교육단계부터 업력에 따른 벤처기업 지원(우대)제도의 차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 기업경영정보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여성기업은 투자유치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투자유치는 자금확보 수단만이 아니라 투자기관으로부터 기업경영, 기술개발, 마케팅, M&A, 유관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아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나. 정책제안

1) 여성기업 전용펀드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펀드는 2006년에 처음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한동안 여성기업을 위한 투자펀드가 결성되지 못하다가 2014년에 100억 규모로 결성되어 포스코기술투자가 맡아 운용중이다. 2015년에는 145억 규모로 세 번째 여성기업 투자펀드가 결성되어 수림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에 있다. 전체 145억 중에서 60%를 반드시 여성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4개의 여성기업에 5억에서 20억씩 투자되었으며 일부 투자금은 기타 유망 여성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되고 있

다. 2016년 4월에 네 번째로 145억의 펀드가 추가로 결성되어 캐피탈원에서 운용을 맡고 있다.

○ 수림창업투자회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여성기업 중에서도 기술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유망 여성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와 더불어 유망 여성기업 발굴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여성기업에 대한 기술투자펀드가 결성되었고 그중 한 개(1차)는 운용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는 아직도 운용 중이다. 앞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투자펀드 운용실적을 검토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한 여성기업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여성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안건(심의연월일: 2014.4.23.).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6). 2016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함께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김기완(2011).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확인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김종운·김홍기(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청·한남대학교.

김주미·신동은(2012).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계열별 창업 교육과정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나성현·조유리·강유리·정원준(2014). 벤처·창업 정책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

성태경·이상규·지영희(1998). 한국 벤처산업의 현황 및 과제. 경기교육논총. 제7호. 173-191.

송치승·박재필(2013).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국제·경영연구. 제20권 제5호(통권51호). 215-240.

송치승(2011). 최초벤처확인인증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금융연구. 322. 53-77.

양인숙·김난주(2005). 기술집약형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이장우·장수덕(1998). 성공벤처기업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452-482.

이진주·라중덕(1985). 연구개발형 벤처비즈니스의 성패연구 -연구개발결과의 기업화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11권. 35-65.

이춘우(2001). 벤처기업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 산업과 경영. 13권 2호. 1-30.

이춘우(2005).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4권 제2호. 315-348.

이현숙·이장우·김한얼·이상명(2012). 벤처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벤처 활성화 방안. 경

영학연구. 제16권 제2호. 211-228.

임길환·정유훈(2014).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정차근(201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40-59.

조덕희·이영주·지민웅·신종원·한창용(2015). 벤처 진단 및 벤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조덕희(2016). 벤처 진단 및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KIET 산업경제. 22-34.

조호정·이부영(2016). 벤처활성화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슈리포트. 2016권 13호. 1-14.

중소기업청(2015a). 2015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중소기업청(2016a).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2016b). 2016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5).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6). 2015 여성기업 백서.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6).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

최종화(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STEPI Insight. 제143호. 1-37.

(사)한국여성벤처협회(2016). 2016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운영지침.

홍성도(1998).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공고문

더벨(2016.7.26.). 수림창투, 여성기업펀드 투자 속도.

미래창조과학부(2016).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밀착지원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6.8.4.).

산업통상자원부(2016).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465호.

중소기업청(2016c).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49호).

중소기업청(2016d). 2016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http://www.smtech.go.kr/front/ifg/dt/datainfo01_detail.do?buclYy=2016&buclCd=S0001&bitmClSe=MB6188&bitmSeq=8142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검색일: 2016.9.1.)

중소기업청(2015b). 창업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76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564호.

중소기업청(2015c),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 전용 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58호.

중소기업청(2014a). 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4.8.29.).

중소기업청(2014b). 정부 5,470억원 출자하여 벤처펀드 2조원 조성.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4.3.13.).

중소기업청(2009).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선 및 지자체 벤처투자 허용.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09.9.22.).

중소기업청(2006).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확인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06.6.5.).

중소기업청·여성가족부(2015). 여(女) 보세요! R&D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중소기업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2.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6), KIST, 여성 기업 R&D지원 앞장 서, KIST 보도자료(2016.6.16.).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15). 2015년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16). 2016년도「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15&efYd=20141119#0000, 검색일: 2016.9.1.)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99&efYd=20160930#0000, 검색일: 2016.9.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127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32&efYd=20160930#0000, 검색일: 2016.9.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3736호, 2016.1.6.,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71&efYd=20160407#0000, 검색일: 2016.9.1.)

산업융합촉진법[법률 제12609호, 2014.5.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31&efYd=20140520#0000, 검색일: 2016.9.1.)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16.9.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1호, 2015.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982&efYd=20150203#AJAX, 검색일: 2016.9.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12&efYd=20160930#AJAX, 검색일: 2016.9.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016호, 2015.1.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389&efYd=20150120#0000, 검색일: 2016.9.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204&efYd=20161004#0000, 검색일: 2016.9.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3863호, 2016.1.27.,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403&efYd=20160127#AJAX, 검색일: 2016.9.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4%91%EC%86%8C%EA%B8%B0%EC%97%85

%EC%B0%BD%EC%97%85%20%EC%A7%80%EC%9B%90%EB%B2%95#undefined, 검색일: 2016.9.1.)

중소기업청(2015d). 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15.8.1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16.8.29.).

지방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18&efYd=20160930#AJAX, 검색일: 2016.8.24.)

인터넷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DB.

(http://rndgate.ntis.go.kr/matrix.do, 검색일: 2016.9.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검색일: 2016.8.24.)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http://www.kibo.or.kr/src/pds/kbz900.asp?keyword=4, 검색일: 2016.9.30.)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운용요령(2016.4.5. 개정)

(http://www.kibo.or.kr/src/pds/kbz900.asp?keyword=6 검색일: 2016.9.30.)

기술보증기금, 우선지원 대상 기술기업 분류기준.

(http://www.kibo.or.kr/src/pds/kbz900.asp?keyword=4, 검색일: 2016.8.24.)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확인업무세부지침(2014.10.22. 개정)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n_news/announce/company_rule.xml&page=05, 검색일: 2016.9.3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http://law.krx.co.kr/las/TopFrame.jsp, 검색일: 2016.8.24.)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조회>전국사업체조사(http://meta.narastat.kr/, 검색일: 2016.12.15.)

특허법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4188&efYd=20150819#AJAX, 검색일: 2016.8.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사업.

(https://www.kobaco.c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kobaco/businessintro/business/business_venture.xml, 검색일: 2016.9.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DB. 경제활동>인력현황>연령별 경제활동인구(성별).

(https://gsis.kwdi.re.kr/gsis/kr/tblInfo/TblInfoList.html?vw_cd=MT_ZTITLE, 검색일: 2016.12.15.)

한국연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사업목록>신진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안내 참조.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biz.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319&c_now_tab=0, 검색일: 2016.9.30.)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GEDI(https://thegedi.org/, 검색일: 2016.9.1.).

벤처인 홈페이지

벤처자료<벤처통계시스템<총괄현황(기준일: 2016.10.23.)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data/C61100.do, 검색일: 2016.10.24.)

벤처확인<벤처확인신청절차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2000.jsp, 검색일: 2016.8.24.)

벤처확인<벤처확인요건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검색일: 2016.8.21.)

벤처지원<벤처기업 우대제도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검색일: 2016.8.21.)

벤처확인(http://www.venturein.or.kr, 검색일: 2016.9.1.).

연구보고 2016-48

간 행 물 제 목

2016년 9월 30일 인쇄
2016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OOO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代)
인쇄처 : OOOOO
전화 / 02-000-000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793-01